

법제교류 연구 16-18-⑩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법적 과제

이 상 모 · 모 쓰지엔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법제교류 연구 16-18-⑩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법적 과제

이 상 모 · 모 쓰지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법적 과제

Legal Issues of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연구자 : 이상모(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Lee, Sang-Mo
모 쓰지엔(마카오대학 법학원 교수)
Mo, John Shi Jian

2016.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은 중국이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로 아시아 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5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6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 AIIB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는데, 여기에서 중국은 AIIB에서 출자비율 30.34%(1위)를 차지함에 따라 사실상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음
- 이처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에 따라 향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둘러싼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를 분석을 통하여 지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다자개발은행과 AIIB

-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이란 국제금융기구로서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개발행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서, 글로벌 은행(Global Bank), 지역 은행(Regional Banks) 및 소지역 은행(Sub-Regional Banks)이 있음
- AIIB는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지역적 및 지원분야가 중첩될 수 있지만, 기존 금융질서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과 주요 내용

- AIIB의 발전과정은 크게 4단계(제안단계, 의사신청단계, 협정체결, 출범이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AIIB는 아시아 인프라간 연계성 강화와 기존 MDB와의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함
- AIIB의 주요조직으로는 총회, 이사회, 총재와 부총재 및 임직원으로 구성
- 총회의 의사결정방식은 일반다수결 투표, 특별다수결 투표, 최다다수결 투표 및 만장일치로 구분됨

- AIIB의 업무는 통상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업무와 특별기금 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업무가 있고, 이러한 재원은 상호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됨
- AIIB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가 인정
- AIIB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은 분쟁당사자의 유형에 따라 ① 회원국과 AIIB간에 발생하는 분쟁과 ② 회원국과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구분하고, 분쟁의 대상내용에 따라 ①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② 회원국의 지위상실 또는 AIIB 업무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으로 구분하고 있음

□ AIIB 지배구조와 법적 과제

- AIIB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AIIB의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임
- AIIB의 운영에 있어서 중국의 독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이사회 의사결정 주체에 관한 문제임

□ AIIB와 분쟁해결

- AIIB협정의 분쟁해결조항은 AIIB 협정문의 제54조, 제55조임
- 협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문제는 AIIB의 이사회가 행하여야 하고, 최종 해석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은 총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

-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와 AIIB간의 갈등과 운영이나 프로젝트의 중지 또는 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중재를 받아야함

□ AIIB와 국내법적 과제

- AIIB 협정이 회원국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 AIIB가 회원국 국내법상 법인의 지위를 가진다면, 국내법상의 법인의 요건과 AIIB 협정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방법을 모색해야 함
- AIIB가 국내법상 법인의 지위를 가질 경우, 법인으로서 향유하는 민사적 또는 상사적 책임과 이에 대한 면책권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전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AIIB 설립은 국제경제 금융질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리더십의 한 축을 맡게 하는 긍정적인 한 걸음임과 동시에 향후 아시아 국가들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 사회기반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금융 자원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과 AIIB에의 연결을 통하여 참여를 통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한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중국의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의 법적 구조에 대한 기초적 이해자료 제공
- 정부차원에서 AIIB를 활용한 진출전략과 함께 금융기관에게는 해외진출과 해외수주 자금지원 제도 개선 등의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주제어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다자개발은행, 주권면제, 지배구조, 분쟁해결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s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established with China playing the central role in accordance with th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led by the USA through World Bank (WB),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etc. AIIB will perform the role of providing support for the building up of infrastructures such as roads, railways and ports mostly in Asian region. Currently, 57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AIIB, which was officially launched on January 16, 2016.
- AIIB i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that China's President Xi Jinping personally proposed and was found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infrastructural investment into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China in fact secured the power of veto for key agendas by securing investment equity of 30.34% (1st) in AIIB. Korea is ranked the 5th in terms of the equity ratio of 3.81% following China, India (8.52%), Russia (6.66%) and Germany (4.57%) among the total of 57 founding member countries. As such, Korea managed to secure the right to appoint 1 of the vice-presidents of AIIB.

- There is a need to accurately understand AIIB due to the presence of manifestation of var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launching of AIIB.

Purpose

- This research aims to seek the mea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regions and to deduce the implications for Korea at the same time on the basis of accurate understanding of AIIB and through the analysis of key legal controversial issues and tasks that AIIB can induce.

II. Major Contents

MDB and AIIB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refers to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that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and expertise advices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ctiv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nclude Global Banks, Regional Banks and Sub-regional Banks.
- Although there may be overlapping of the regions and areas of support between AIIB and ADB, it is anticipated that AIIB will put efforts to achieve harmony with the existing financial order.

Establishment and key details of AIIB

-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AIIB can largely be divided into 4 stages (proposal stage, stage of application of intention, stage of execution of agreement and stage after its launching).

- AIIB is aimed at fortification of connectivity among the infrastructures in Asia and close cooperation with the existing MDB.
- AIIB is composed of key organizations including General Assembly and Board of Directors, as well as president, vice-presidents, executives and staffs.
- Formats of decision making at the General Assembly can be categorized into general majority vote, special majority vote, largest majority vote and unanimous vote.
- Tasks of AIIB are composed of the conventional tasks with the conventional financial resources and special tasks with special fund as the financial resources. These financial resources are managed by being completely and mutually separated.
- Since AIIB is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prerogatives and exemptions that are acknowledg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re granted.
- Disputes stipulated by AIIB are categorized into ① disputes between the member country and AIIB and ②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parties of the dispute, and into ①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f agreement and ② disputes arising from the loss of status of member countries or termination of the tasks of AIIB according to the details of the issues in dispute.

Governing structure and legal tasks of AIIB

- Issues that are continuously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founding and operation of AIIB include the governing structure of AIIB, that is, the issues related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association with its governance.
- These are the issues on the possibility of AIIB being managed dogmatically by China and transient nat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AIIB and resolution of disputes

- Provisions on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AIIB Agreement include Articles 54 and 55.
- Issu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need to be resol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AIIB and the interpreta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need to acquire the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n order for it to become the final interpretation.
- Countries wishing to withdraw from the member status and conflict with AIIB, and stoppage in the operation or projects of AIIB need to undergo mediation executed by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IIB and domestic legal tasks

- Whether the AIIB Agreement can be directly implemented within the member countries has become an issue.

- If AIIB were to have legal status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e member country, means of arbitration need to be sought in the event of difference between the requisites for legal entities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member country and the AIIB Agreement.
- If AIIB were to have legal status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e member country, there is a need to arbitrate the civil or commercial responsibilities as legal entity, and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for such responsibilities.
- Outlook and implications for Korea
 - Establishment of AIIB is seen as an affirmative step towards China taking up an axis of leadership in the process of the coordinat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orders, and is anticipated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infrastructures for the better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by Asian countries in the future simultaneously.
 -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practical opportunity to link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pursued by China and the Eurasian initiative strategy of Korea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by means of linkage with AIIB.

III. Expected Effects

- Provide material for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legal structure of the Asian Infrastructural Investment Bank of China

□ Provide implicat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provision of funds for overseas expansion and winning of orders in overseas countries by financial institutions along with the expansion strategy by utilizing AIIB at the government level

▶▶ Key Words : Asian Infrastructural Investment Bank,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Sovereign immunity, governance, dispute settlemen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21
제 1 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21
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2
제 2 장 다자개발은행과 AIIB	25
제 1 절 다자개발은행의 의의	25
1. 의 의	25
2. 유 형	25
3. 한국과 다자개발은행	27
4. 중국과 다자개발은행	27
제 2 절 다자개발은행과 AIIB	31
1. ADB와 AIIB와의 관계	31
2. 세계경제질서 재정립 노력으로의 AIIB	32
제 3 절 AIIB의 당면과제	34
1. AIIB 출범시 제기된 문제점	34
2. ADB 창립시 제기된 문제점	35
3. 다른 MDB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	37
4. 소 결	37

제 3 장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과 주요 내용	39
제 1 절 AIIB의 추진배경과 설립과정	39
1. 추진배경	39
2. 설립과정	39
3. 주요현황	46
4. AIIB의 주요 규정	49
제 2 절 목적 및 회원국	50
1. 목 적	50
2. 회원국	50
제 3 절 AIIB의 지배구조	51
1. 총 회	53
2. 이사회	55
3. 총재와 임직원	59
제 4 절 의사결정	59
1. 의사정족수	59
2. 수권자본과 지분율	59
3. 투표권	60
4. 각 회원국별 지분율과 투표권	62
제 5 절 주요업무	66
1. 업무유형	66
2. 업무방법	66
3. 업무원칙	66
4. 특별기금	67

5. 업무의 중단과 종료	67
제 6 절 특권과 면제	68
1. 사법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	68
2. 임직원의 면제와 특권	68
3. 특권과 포기	69
제 7 절 분쟁해결	69
1. 분쟁의 범위	69
2.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따른 분쟁	70
3. 회원국의 지위상실 또는 업무의 종료에 따른 분쟁	70
제 4 장 AIIB 지배구조와 법적 과제	71
제 1 절 문제의 소재	71
제 2 절 의사결정과 투표권	72
1. 기존 MDB와의 비교	72
2. CMIM과의 비교	74
3. 소 결	78
제 3 절 이사회 의 상주성	81
제 4 절 감독체제	82
제 5 장 AIIB와 분쟁해결	83
제 1 절 문제의 소재	83
제 2 절 AIIB의 분쟁해결절차	87
제 3 절 분쟁해결조항의 해석권한	91

제 6 장 AIIB와 국내법적 과제	95
제 1 절 AIIB와 국내법적 법인격	95
1. 문제의 소재	95
2. AIIB 협정의 회원국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	95
3. 법인격의 인정여부	98
4. 소 결	100
제 2 절 AIIB와 주권면제 원칙	101
1. 문제의 소재	101
2. 중국의 입장	102
3. 한국의 입장	103
4. 소 결	104
제 3 절 AIIB와 국제사법	106
1. 문제의 소재	106
2. 중국의 입장	107
제 7 장 결론 : 전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09
제 1 절 AIIB의 전망	109
제 2 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10
1. 북한과의 협력기회로서의 AIIB	110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전략적 제휴로서의 AIIB	111
3. 국내 ICT 산업발전의 기회로의 AIIB	112
참 고 문 헌	113

<표 차례>

<표 1> 다자개발은행의 유형	29
<표 2> AIIB와 개발금융기구간의 협력현황	32
<표 3> AIIB 설립 추진경과	43
<표 4> AIIB 승인 사업현황	48
<표 5> 총회의 전권사항(제23조)	53
<표 6> AIIB와 다른 MDB의 총회 전권사항 비교	54
<표 7> 이사회 구성	57
<표 8> 총 투표권수(협정 제28.1조)	60
<표 9> 각 유형별 투표방법과 주요 내용	61
<표 10> 회원국별 지분율 및 투표권	63
<표 11> IBRD의 각 유형별 투표방법과 주요 내용	72
<표 12> ADB의 각 유형별 투표방법과 주요 내용	73
<표 13> CMIM의 분담금과 투표권	74
<표 14> 다자개발은행 지배구조	76
<표 15> 다자개발은행 주요국의 지분율	79
<표 16> 다자개발은행 10대 자금수혜국	80

<그림 차례>

<그림 1> AIIB의 지배구조	52
<그림 2> AIIB 가입회원국 지분율 및 투표권 현황	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AIIB)이란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조성 과 아시아 내 인프라 간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다자 및 양자 개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간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자 다자개발은행이다.¹⁾ 이는 2013년 10월 2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IIB의 설립에 관한 제안을 한 이후, 2여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 1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2016년 1월 당시 총 57개국이 협정의 회원국으로 참석하였는데, 아시아 26개국, 유럽 20개국, 아프리카·중동 10개국, 남미 1개국으로 구성되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금융기구로 발돋움하였다.²⁾

이처럼 Bretton Woods 체제에 기초한 World Bank, ADB 등 미국과 일본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대응하여 자국 중심의 금융질서 형성의 첫 단추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AIIB³⁾는 중국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로서, 그러한 운영체제는 중국 법과 법원에서의 새로운 이론과 현실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AIIB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새로운 과제를 야기하고 있으

1) 아시아 인프라 투자협정 전문의 목적.

2) AIIB 참가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G20 국가중 14개국(미국,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제외, 현재 캐나다는 가입신청중), G7 국가중 4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3) Bloomberg, "China's \$50 Billion Asia Bank Snubs Japan, India"(2014. 5. 12)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4-05-11/china-s-50-billion-asia-bank-snubs-japan-india-in-power-push> (2016.10.24. 방문); 『明報』, 『華主導亞投行 日本印度無份』(2014. 5. 6.); 임호열 등 4인,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Vol. 15 No. 12, 2015, p.3에서 재인용.

며, 향후 AIIB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AIIB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AIIB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달리 인프라 투자 지원에 역량을 따라서 본 연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먼저 AIIB는 다자간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이기 때문에, AIIB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MDB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다. 다만, 현재 MDB에 속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한국이 가입한 MDB를 위주로 설명을 한다.

둘째, AIIB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AIIB의 추진배경과 과정, 주요 지배구조 및 운영체제 등을 살펴본다.

셋째,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의 설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기타 MDB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넷째,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분쟁과 관련하여 AIIB 협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섯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이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만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중국 국내법상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로 함께 검토한다.

끝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무리 한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공동연구자인 모쓰지엔 교수님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 및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둔다.

제 2 장 다자개발은행과 AIIB

제 1 절 다자개발은행의 의의

1. 의 의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이란 국제금융기구로서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개발행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이다.⁴⁾ 여기서 국제금융기구란 명시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국가 이상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금융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조직한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개발은행은 글로벌 은행(Global Bank), 지역 은행(Regional Banks) 및 소지역 은행(Sub-Regional Banks)으로 나눌 수 있다.⁵⁾

2. 유형

(1) 글로벌 은행

글로벌 은행(Global Bank)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 WB)과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 NDB)이 있다. 세계은행(WB)이란 1948년에 설립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 UN)산하의 국제금융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국가들의 재건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4) World Bank 홈페이지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정의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EXTABOUTUS/0,,contentMDK:20040612~menuPK:8336267~pagePK:51123644~piPK:329829~theSitePK:29708,00.html> (2016. 10.16 방문)

5) Raphaelle Faure, etc,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 A short guide", December 2015, p.2. <https://www.shareweb.ch/site/Multilateral-Institutions/Documents/Short%20guide%20to%20multilateral%20development%20banks.pdf> (2016년 10월 16일 방문) 이하에서는 본 보고서의 분류에 따라 다자개발은행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DA)가 있다. IBRD와 IDA의 주요한 구분은 지원대상국의 소득정도이다. 즉 IBRD는 중소득 국가에 대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IDA는 저소득 국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 NDB)이란 BRICS 국가, 즉 브라질(Brazil) · 러시아(Russia) · 인도(India) · 중국(China)이 BRICS 국가의 경제개발과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2) 지역 은행

지역 은행(Regional Banks)에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 ADB),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 AFDB), 소련 및 동유럽권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BRD), 유럽 국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설립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EIB), 중남미의 경제사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IADB), 무슬림 국가의 경제 ·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 IsDB) 있다.

(3) 소지역 은행

소지역 은행(Sub-Regional Banks)에는 서아프리카, 중미, 중남미, 동아프리카, 동남부아프리카 등의 각 지역의 지역통합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서아프리카 개발은행(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 WADB 또는 BOAD),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 CABEL), 중남미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 CAF), 동부아프리카개발은행(East African Development Bank: EADB), 동남부아프리카무역개발은행(Eastern and Southern African Trade and Development Bank 또는 : Preferential Trade Area Bank : PTA Bank)이 있다.

3. 한국과 다자개발은행

한국은 2016년 10월 현재 상기에서 분류된 다자개발은행 중 7개에 가입을 하고 있다. 즉 1955년 8월 26일 IBRD에의 가입을 시작으로, 1961년 5월 18일 IDA, 1966년 8월 22일 ADB, 1982년 12월 30일 AfDB, 1991년 3월 28일 EBRD, 2005년 3월 16일 IDB, 그리고 2015년 4월 11일 AIIB에 가입을 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1963년 11월에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최근 2015년에 AIIB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금융기구에는 총 15개가 있다.⁶⁾

4. 중국과 다자개발은행

중국은 1980년 5월에 IBRD와 IDA에의 가입을 시작으로, ADB에는 1986년 2월 17일, DB에는 2009년 1월, 최근 2015년 12월에 EBRD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국제개발은행에 가입함과 동시에, AIIB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구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996년 4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상하이협력기구(上海協力機構,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SCO)를 설립을 시작으로,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2012년엔 긴급외환보유기금(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 CRA) 설치에 합의한 후, 2014년 7월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해 설립한 브릭스 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 NDB 또는 BRICS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몽골,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 일대일로 주변국의 낙후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丝路基金)을 설립하였다.

<표 1> 다자개발은행의 유형

구 분		명 칭	설립 연도	참가국	본 부	
Global Bank	World Bank	IDA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960	173	미국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44	189	미국
	NDB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2014	5	중국	
Regional Banks	AD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1966	67	필리핀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1964	78	코트디부아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2015	57	중국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91	65	런던	
	EIB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1958	28	룩셈부르크	
	IA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959	48	미국	

제 2 장 다자개발은행과 AIIB

구 분		명 칭	설립 연도	참가국	본 부
	IsDB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1975	56	사우디아라비아
Sub-Regional Banks	WADB	서아프리카 개발은행(West African Development Bank)또는 BOAD	1993	8	토고
	CABEI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1960	8	엘살바도르
	CAF	중남미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1970	17	베네수엘라
	EADB	동부아프리카개발은행(East African Development Bank)	1967	13	우간다
	PTA	동남부아프리카무역개발은행(Eastern and Southern African Trade and Development Bank)	1985	20	부룬디

출처 : Raphaele Faure, etc,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 A short guide”, December 2015, p.2.(<https://www.shareweb.ch/site/Multilateral-Institutions/Documents/Short%20guide%20to%20multilateral%20development%20banks.pdf>)의 내용을 기초로 재작성 (2016. 10. 22 방문)

제 2 절 다자개발은행과 AIIB

1. ADB와 AIIB와의 관계

AIIB는 중국이 주도로 설립한 은행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아시아 및 극동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⁷⁾ 하는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지역적 및 지원분야가 중첩될 수 있다.

먼저 ADB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전체사업의 60% 이내에서 환경·지역협력·교육·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프라사업도 포함하고 있지만, 연간 7,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역내 모든 인프라 수요를 뒷받침할 수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인도·동남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다.⁸⁾ 그러나 AIIB는 주요한 사업의 항목이 아시아 인프라 수요에 집중하게 되면, 동남아 지역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도 집중하게 된다면, 기존 ADB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⁹⁾

따라서 AIIB는 기존 국제금융질서에서의 도전이라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MDB와 각국 국책은행 및 글로벌 금융회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의 모색이 예상되기 때문에 ADB를 포함한 기존 금융질서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⁰⁾ 다음 표는 AIIB가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7) ADB 협정 제1조.

8) 임호열 등 4인,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2, 2015, p.13.

9) 앞의 각주 참조

10) 이현태, 김준영,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25(2016), p. 8.

<표 2> AIIB와 개발금융기구간의 협력현황

대상기구	체결협정	체결일
세계은행(WB)	공동자금조달 협력 협정 (Co-Financing Framework Agreement)	2016. 4. 13
아시아개발은행(ADB)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16. 5. 2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16. 5. 11
유럽투자은행(EIB)	공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16. 5. 30

출처 : AIIB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http://www.aiib.org/html/NEWS/> (2016. 10. 16 방문) ; ADB: http://www.aiib.org/html/2016/NEWS_0502/102.html (2016. 10.16 방문); EBRD: http://www.aiib.org/html/2016/NEWS_0511/109.html (2016. 10.16 방문); EIB: http://www.aiib.org/html/2016/NEWS_0530/113.html (2016. 10.16 방문)

2. 세계경제질서 재정립 노력으로의 AIIB

중국이 생각하는 AIIB의 주요 설립목적과 혜택은 틀림없이 국제문 제에서 주도권의 확보와 자국 중심적 이익에 맞춰 국제경제질서에 영 향을 행사하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다.¹¹⁾ 중국은 당연히 상호적인 공 동이익이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IB의 설립은 중국의 세계경제와 금융질서를 재정립하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11) Daniel Weiser, “Does The US Fear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vailable at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investing/040915/does-us-fear-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asp>>. (2016.10.16. 방문)

하지만 AIIB가 평화적이고 조화로운 방식의 지역간 경제통합과 경제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구이자 플랫폼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의 동기와 관심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¹²⁾ 만약 중국이 AIIB 회원국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 AIIB는 사실 실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AIIB 설립목적과 성격을 확대하면서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만 한다.

실제로, 처음 AIIB 설립을 구상할 때부터 중국과 미국간의 권력투쟁 현상이 나타났다. 즉 미국은 공식적으로 AIIB의 설립을 반대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AIIB가 환경과 부정부패 등의 국제대출기관의 기준이 준수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¹³⁾ 그리고 이러한 우려로 인해 미국과 일본이 AIIB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보면 AIIB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명백하다.¹⁴⁾

이러한 미국정부의 입장에 비해, 미국의 민간부문은 AIIB가 미국의 세계 영향력과 아시아 내 달러 지배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다 직접적인 비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¹⁵⁾ 지난 2016년 1월 16개일 AIIB의 공식 출범시에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싱가포르가 참여하였고, 지난 8월에는 북미지역에서는 최초로 캐나다도 AIIB에의 참여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향후 AIIB의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AIIB가 향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세계경제와 금융질서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아직 예측하기

12) AIIB 협정 전문.

13) Daniel Weiser, "Does The US Fear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vailable at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investing/040915/does-us-fear-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asp>>. (2016.10.16. 방문)

14)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우방국을 AIIB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였다. Daniel Weiser, "Does The US Fear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vailable at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investing/040915/does-us-fear-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asp>>. (2016.10.16. 방문)

15) Daniel Weiser, "Does The US Fear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vailable at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investing/040915/does-us-fear-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asp>>. (2016.10.16. 방문)

어렵다.

중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일부 프로젝트는 중국의 특성을 극복해야 하겠지만, 그 핵심은 AIIB는 중국을 비롯하여 모든 이해관계국과 회원국들 및 AIIB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원국에 상호적으로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번도 세계경제금융의 리더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세계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고 공통적인 방법으로 세계경제와 금융질서를 재정립해야 하는 지를 배우게 될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제 3 절 AIIB의 당면과제

아직 1년이 채 운영되지 않는 AIIB에게 있어서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AIIB 출범시에 미국이나 일본 등이 AIIB 비참여국이 제시한 우려와 ADB가 출범당시에 제기되었던 논쟁은 AIIB가 직면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하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AIIB 출범시 제기된 문제점

먼저 AIIB의 출범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우려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과 미국이다. 먼저 일본은 지난 2014 3월 31일 재무상과 경제재정·재생상 등이 AIIB의 불투명한 조직운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즉, 일본 정부는 AIIB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여신 심사시에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또한 2015년 3월 13일 기시다 일본 외무장관의

16)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유보 및 전망”, 『주간 금융브리프』, 24권 14호, 2015. 4, pp.18-19.

기자회견에서, ADB 등 기존 국제개발금융기관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일정한 가치가 있지만, 한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공정한 거버넌스를 갖출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고,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로 인해 다른 채권국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岸田外務大臣会見記録 2015/03/13) 일본은 AIIB 참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¹⁷⁾ 이처럼 일본은 AIIB에 불참하는 이유를 비정상적인 지분구조에 따른 공정한 거버넌스의 구비 우려와 여신 심사조건시 준수되어야 할 정책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¹⁸⁾

2. ADB 창립시 제기된 문제점

아시아 개발은행의 창립시에 논의되었던 많은 쟁점들은 향후 AIIB를 전망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논쟁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논의를 살펴보면 자본공여국인

17) 이승주,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국제정치: 거대 FTA와 AIIB의 사례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No. 2015-22, p.8. 또한 일본은 기존의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일본위상의 저하라는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도 중국 정부가 자의적인 지배력 행사와 부적절한 대출 심사가 개발도상국 발전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들어 가입을 미루고 있다. 장원재, “AIIB 사태로 본 일본의 대(對) 중국인식”, 『일본공간』 17호, 2016. pp.326-327

18)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이 중국의 등장에 따른 자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의 축소의 우려에 기인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① AIIB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② 중·일 양국 및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유보 및 전망”, 『주간 금융브리프』, 24권 14호, 2015. 4, pp.18-19. 또한 최근에는 ① 아소 타로(麻生太郎) 일본 재무장관이 “대출 기준과 은행 거버넌스에 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AIIB에 참여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②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2015년 3월 보아오포럼(博鳌亚洲论坛)에서 일본의 AIIB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의 수집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승주,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국제정치: 거대 FTA와 AIIB의 사례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No. 2015-22, p.9.

미국 등 선진 역외국가들에 대한 자본수혜국인 역내국가들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ADB의 참여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일본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좋지 않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역내국가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 주로 논의가 제기되었다.¹⁹⁾ 이러한 일본에 대한 국가적인 반감에 따라 특별자금, 지분출자 및 은행본부의 설치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되었다.

먼저 특별자금과 관련하여 특별자금은 낮은 이율로 장기간 걸친 대부를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soft loan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원조수혜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그것을 제공한 국가의 여타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조건이 붙게 되고, 이는 경제적 구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역외 국가들이 상당한 양의 자금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제국주의적 간섭과 침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참여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특별자금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²⁰⁾

이외에도 AIIB가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해 세계은행과 ADB보다 더 신속하게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국제개발은행과는 다른 지배구조를 구상하겠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엄격한 대출 및 투자 기준, 은행의 운영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감시 체제, 금융적으로 건전한 은행의 운영 등이 국제개발은행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²¹⁾이 비참여국가들의 입장이었다.

19) 박태균, 박태호, “1960년대 아시아 개발은행의 창립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호, 2001, pp.9-13.

20) 앞의 각주 참조

21) 앞의 각주, pp.12-13.

3. 다른 MDB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

기존 MDB의 경우 중요 안건 승인을 위해 회원국 85%의 동의를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각각 IBRD, IFC와 ADB에서 16% 내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반대하면 중요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 즉 실질적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²²⁾ 이처럼 일부 선진국이 주요 출자국으로서의 높은 지분을 확보하고, 경제력 변동에 따른 지분조정에 미온적이거나 총재가 특정국 인사로 선임되며, 거부권 행사로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어, 실질적 거부권의 존재여부가 MDB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이다.²³⁾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중국은 WB에서 중국의 경제력 신장에 상응하는 지분의 상향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의 반대를 이유로 지분을 조정에 실패하였고, 1966년 ADB 출범 이래 9명의 총재가 임명되었으나, 총재직을 차지한 국가는 모두 일본이었다.²⁴⁾

4. 소 결

앞에서 살펴본 바과 같이, 기존의 MDB의 설립과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과, 현 AIIB의 설립시에 제기된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AIIB의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우려로서, 거부권의 존재여부이다. 둘째로, AIIB의 운영에 있어서 중국의 독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즉 이사회 의 비상주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장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22) 오영일, “AIIB 출범: 아는 만큼 활용한다”, 『POSRI 보고서』, 2015. 04. 29, p.2.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3767> (2015년 10월 15일 방문)

23) 임호열 등 4인,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2, 2015, p.12.

24) 앞의 각주 참조

제 3 장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과 주요 내용

제 1 절 AIIB의 추진배경과 설립과정

1. 추진배경

중국이 주도적으로 AIIB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2020년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수요는 약 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기존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개발기관들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²⁵⁾ 인프라 건설을 통한 아시아의 경제 통합과 기존 국제기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며, 미국 및 일본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투자 다변화 및 위안화 국제화 추진하기 위해서²⁶⁾ AIIB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 설립과정

AIIB의 설립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⁷⁾

(1) 제1단계: 제안단계

이 단계(2013. 10. 2-2014.10.24)는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수실로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공식 제안에서부터 <AIIB

25) 이승주,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국제정치: 거대 FTA와 AIIB의 사례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No. 2015-22, p.7.

26) 이와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봉걸, 송송이, “AIIB 출범과 우리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방안”, 『Trade Focus』, Vol.14 No.52, 2015. 12, pp.5-6 참조.

27) 이하에서 제기되는 제1단계부터 제3단계로의 구분과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强力, “亚投行面临的法律问题与对策”, 载《第二节长安与罗马两个文明的对话国际学术研讨会》, 2015.06.02. pp.104-1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시기이다. 먼저 2013년 10월 2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카르타에서 수실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양국정상회담에서 역외의 현행 다자간개발은행과 협력하여 상호보완하고 공동으로 아시아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AIIB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수실로 대통령은 중국이 제안한 AIIB의 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같은 달 리커창 총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여 AIIB의 설립을 재차 제안하였다. 2014년 10월 24일 중국·인도·싱가포르 등 21개국²⁸⁾이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되어 창립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정부대표들이 베이징에서 <AIIB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AIIB설립을 결정하였다.

(2) 제2단계 : 의사신청단계

이 단계(2014.11.28.-2015.3.31)는 AIIB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이후부터 신청마감기한인 3월31일까지로서, 57개국이 창립회원국이 가입을 신청하였고, 3차례의 설립협상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시기이다. 2014년 11월 28일, 제1차 AIIB설립협상대표회의가 운남성 쿤밍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22개국의 협상대표가 참석하였다. 2015년 1월15일~16일, 제2차 AIIB설립협상대표회의가 인도 뭍바이에서 개최하였으며, 회의에서 다자 임시사무처의 수석변호사들이 작성한 AIIB 협정초안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진

28) 창립회원국 21개국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부르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방글라데시이다. 당시 미국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AIIB 가입에 대한 불참을 종용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은 AIIB 출범을 조인식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미국과 일본이 AIIB 설립 반대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로 ①지배구조 투명성 결여와 ②안전장치(safeguard)의 부재를 들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향후 AIIB의 출범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 ADB와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은행들이 채택하고 있는 최적관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AIIB 출범 선언과 향후 논의의 방향”, 『국제금융이슈』23권 44호, 2014. 11. p.15.

행하였다. 2015년 3월 30일~31일, 제3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29개국의 협상대표와 AIIB 다자 임시 사무처 총재 진리쥘(金立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영국은 2015년 3월 12일 공식적으로 AIIB에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AIIB에 가입한 최초의 주요서방국가가 되었다. 이후 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 서방국가들도 창립회원국의 신분으로 연이어 AIIB에 가입을 신청하였고, 러시아·브라질 등 역내국가와 주요 신흥경제국가에서도 잇달아 신청하여 AIIB창립의사를 표명한 회원국이 되었다. 2015년 4월15일까지 AIIB창립회원국 의사를 밝힌 국가는 57개국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중 역내국은 37개국, 역외국은 20개국이며, 지역구성으로는 아시아는 34개국·유럽18개국·오세아니아 2개국·남미 1개국·아프리카 2개국이다.

(3) 제3단계: 협정체결

이 단계(2015.4.27-2016.1.16)는 협정의 초안작성과 협정체결 및 공식 출범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2015년 4월27일~28일, 제4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AIIB 창립회원국 의사를 밝힌 57개 회원국 대표와 AIIB 다자임시사무처 총재 진리쥘(金立群)이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하 AIIB협정) 초안>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2015년 5월 20일~22일, 제5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각 당사국들은 <AIIB 협정>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2015년 6월 말 베이징에서 <AIIB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²⁹⁾ 이어 2015년 6월 29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이하 AIIB협정)의 서명식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창립회원국 의사를 표명 57개국

29) 环球网: 《亚投行章程》签署仪式将于六月底在北京举行<http://world.huanqiu.com/hot/2015-05/6503821.html> (2016. 10.16 방문)

중 필리핀 등 7개국이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아, 해당 7개국은 AIIB가 업무운영을 시작하기 전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4일에는 진리췌(金立群)이 AIIB 총재로서 선출되었고, 2016년 1월 16일에 비로소 AIIB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³⁰⁾

(4) 제4단계 : 출범이후-현재

이 단계(2016.1.17-현재)는 AIIB 공식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AIIB의 공식 출범 이후에, 2월 5일 AIIB 부총재 5명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다른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World Bank, ADB, EBRD, EIB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6월 24일과 9월 29일에는 각각 이사회가 개최되어 신청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이외에도 AIIB는 개방과 포용의 원칙 아래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것을 천명해오면서 홍콩 같은 준(準)주권 국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일본 등 ADB 중심 국가들에도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5일 보아오포럼 금융협력회의에서 진리췌

30) 대만은 2015년 3월 31일 가입신청을 하였지만, 거절되었고, 북한의 신청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http://news.xinhuanet.com/world/2015-03/31/c_127642873.htm. 먼저, 대만이 AIIB에 가입 신청서를 냈으나 가입이 거부된 것은 ‘중화 타이베이(中華臺北·Chinese Taipei)’라는 명칭을 사용, 두 개의 중국(两个中国), “일중일대”이기 때문인데, 중국 정부는 “대만이 적절한 명칭으로 AIIB에 가입하는 걸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5년 11월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이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타당한 형태로 AIIB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표명하였고, 대만 재정부장도 “내년 초 AIIB가 공식 설립되면 대만은 ‘중화 타이베이(中華臺北·Chinese Taipei)’를 ‘국호’로 가입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태호, “양안 정상회담, 푸젠성에 훈풍 대만의 AIIB 가입 문 열려”, 『Issues & Analysis』2015. 12, p.58. 북한의 AIIB 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영국의 인터넷 경제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2015년 2월 특사를 통해 AIIB 가입의사를 밝혔지만, 중국은 북한의 금융·경제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AIIB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표명한 상태에서 가입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고 예측한다. 고정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프로젝트”, 『동북아경제연구』제27권 제3호, 2015.9. pp.9-10.

총재는 현재 30여 개국이 추가로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2017년에 이들 국가의 가입이 실현될 경우 AIIB 회원국은 총 90여 개국으로 ADB 가입국 수(67개국)를 능가하게 된다.³¹⁾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지난 8월 31일 북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캐나다가 AIIB에 대한 가입의사를 표명하였다.

<표 3> AIIB 설립 추진경과

일 자		주요 내용
1단계	2013년 10월 2일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시 AIIB 설립 제의
	2014년 1월 24일	제1차 AIIB 다자협상회의(多邊磋商會)(중국 베이징) 10여개국 참석
	2014년 3월 28일	제2차 AIIB 다자협상회의(중국 베이징), 아시아 15개국 참석
	2014년 5월 2일	장관급 업무 만찬(카자흐스탄), 16개국 참석
	2014년 6월 10일	제3차 AIIB 다자협상회의(중국 상해), 22개국 참석
	2014년 8월 7일	제4차 AIIB 다자협상회의(중국 베이징), 20개국 참석
	2014년 9월 27일	제5차 AIIB 다자협상회의(중국 베이징), 21개국 참석
	2014년 10월 24일	21개국이 창립회원국 확정되어 AIIB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단계	2014년 11월 25일	인도네시아(22) 가입
	2014년 11월 28일	제1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 개최(중국 쿤밍), 22개국 참석

31) 이현태, 김준영,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25(2016), p. 9.

제 3 장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과 주요 내용

일 자	주요 내용
2014년 12월 31일	몰디브(23) 가입)
2015년 1월 1일	뉴질랜드(24) 가입)
2015년 1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25), 타지키스탄(26) 가입
2015년 1월15일 ~ 16일	제2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 개최(인도 뭄바이), AIIB 협정초안 심의
2015년 2월 9일	요르단(27) 가입
2015년 3월 12일	영국 가입신청(서방국가 최초)
2015년 3월 18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가입 신청
2015년 3월 20일	스위스 가입신청
2015년 3월 26일	한국, 터키 가입신청
2015년 3월 27일	룩셈부르크(28), 오스트리아 가입신청
2015년 3월 28일	영국(29), 스위스(30) 가입
2015년 3월 29일	호주 가입신청
2015년 3월 30일	이집트, 핀란드, 러시아 가입신청
2015년 3월 31	키르기스스탄,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가입 신청
2015년 3월 31	창립회원국 모집 마감 예정일(46개국 신청)/ 마감일을 4월 15일로 연기
2015년 3월 31일	제3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 개최(카자흐스탄 알마티), 29개국 참여
2015년 4월 1일	독일(31) 가입
2015년 4월 2일	이탈리아(32), 프랑스(33) 가입
2015년 4월 3일	이란(34), UAE(35) 가입
2015년 4월 9일	말타(36), 키르기즈 공화국(37) 가입

제 1 절 AIIB의 추진배경과 설립과정

	일 자	주요 내용
	2015년 4월 10일	터키(38) 가입
	2015년 4월 11일	스페인(39), 한국(40), 오스트리아(41) 가입
	2015년 4월 12일	네덜란드(42), 브라질(43), 핀란드(44), 조지아(45), 덴마크(46) 가입
	2015년 4월 13일	호주(47) 가입
	2015년 4월 14일	이집트(48), 노르웨이(49), 러시아(50) 가입
	2015년 4월 15일	스웨덴(51), 이스라엘(52), 남아공(53), 아제르바이잔(54), 아이슬란드(55), 포르투갈(56), 폴란드(57) 가입. 총 57개국 가입
3단계	2015년 4월 27 ~ 28일	제4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 개최(중국 베이징), 57개국 참석
	2015년 5월 20일 ~ 22일	제5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 개최(싱가포르), <AIIB 협정> 합의
	2015년 6월 29일	협정문 서명(중국 베이징), 50개국 서명, 7개국은 연말까지 서명
	2015년 8월 24일	제6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 개최(조지아 트빌리시), 진리첸(金立群)을 총재 지명자로 선출
	2015년 9월 28일 ~ 29일	제7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 개최(독일 프랑크푸르트) AIIB'의 주요운영, 재정, 조달 환경 및 사회정책 합의
	2015년 11월 3일 ~ 4일	제8차 AIIB설립 협상대표회의 개최(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IIB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초안협의
	2015년 12월 25일	협정문 발표
	2016년 1월 16일	AIIB 공식 출범

일 자		주요 내용
4단 계	2016년 2월 5일	부총재 5인 선출
	2016년 4월 13일	AIIB와 World Bank간 공동자금조달협정 체결
	2016년 5월 2일	AIIB와 ADB MOU 체결
	2016년 5월11일	AIIB와 EBRD MOU 체결
	2016년 5월 30일	AIIB와 EIB MOU 체결
	2016년 6월 24일	이사회개최, 4건 사업승인
	2016년 6월25일 ~ 26일	제1차 연차총회 개최
	2016년 8월 31일	캐나다 가입신청
	2016년 9월 29일	이사회 개최, 2건 사업승인

출처 :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http://gjs.mof.gov.cn/zhuantilanmu/yth/>) AIIB 홈페이지(<http://www.aiib.org/html/NEWS/>)참고하여 작성 (2016. 10. 22 방문)

3. 주요현황

(1) 사업승인현황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2016년 6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4개국의 전력, 수송 및 도시개선과 관련된 5억 900만 달러의 프로젝트 4건을 승인하였고,³²⁾ 9월 27일-28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미얀마 및 파키스탄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2건(320만달러)을 승인하였다.³³⁾ <표 3>는 AIIB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된 사업현황이다.

32) http://www.aiib.org/html/2016/NEWS_0624/119.html(2016. 10.16 방문)

33) http://www.aiib.org/html/2016/NEWS_0929/157.html(2016년 10월 15일 방문)

(2) 3개년(2016년-2018년) 사업계획

AIIB의 3개년(2016년-2018년) 사업계획이 16.1월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즉 인력채용에서는 2021년까지 최대 7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에서는 2016년 5~10건, 5~12억불 규모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3년간(2016~2018년) 대출 사업의 주체는 공공부문이 70-80%, 민간부문이 20-30% 수준으로하여 향후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며, 자금조달에서는 2016년중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규모를 1억불~5억불로 하여, 2016년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달을 위해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획득 추진하며, 협조용자에서는 2016년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다른 국제금융기구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기술지원에서는 2016년에 저소득 회원국의 사업 준비를 돕는 특별펀드(Special Fund)를 조성하여 기술지원, 자문서비스 등 제공 계획이다.³⁴⁾

34) “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보도자료(2016.02.25.), p.3, <http://economy.go.kr/postView.do?seq=9276&boardSeq=9&curPage=10&pageNum=&search=&searchName=> (2016. 10. 15 방문)

<표 4> AIIB 승인 사업현황

국 가	프로젝트명	대출금액 (million)	승인일	사업분야	공동후원은행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프로젝트 (National Slum Upgrading Project)	\$216.5	2016.6.24	사회적서비스(20%) 도시교통(20%), 고체폐기물관리(60%)	WB
타지키스탄	두산베-우즈베키스탄 국경 도로개선 (Dushanbe-Uzbekistan Border Road Improvement Project)	\$ 27.5	2016.6.24	교통	EBRD
방글라데시	전력공급 시스템 개선 (Distribution System Upgrade and Expansion Project)	\$165	2016.6.24	전력	.
파키스탄	M-4 고속도로 프로젝트 (National Motorway M-4 Project)	\$100	2016.6.24	교통	ADB, DFID(영국 국제개발부)
파키스탄	타르벨라 수력발전소 확장 프로젝트 (Tarbela 5 Hydropower Extension Project)	\$300	2016.9.27	수력발전, 에너지	WB
미얀마	225 MW Combined Cycle Gas Turbine Power Plant Project	\$200	2016.9.27	에너지	IFC, ADB

출처 : AIIB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http://www.aiib.org/html/2016/PROJECTS_1010/161.html (2016.10.16. 방문)

4. AIIB의 주요 규정

현재 AIIB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규정으로는, 기본 문건, 운영정책 및 기구의 문건으로 나누어진다.

(1) 기본 문건

AIIB의 기본문건에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Articles of Agreement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AIIB 협정),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내규(By-Laws of The AIIB), 이사회 임직원의 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Board Officials)과 은행의 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Bank Personnel), 총회의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of the Board of Governors)과 이사의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of the Board of Directors)이 있다.

(2) 운영정책

AIIB는 환경 및 사회구조, 금융에 관한 운영정책, 국가가 보증하는 대출에 대한 일반 조건, 조달정책,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정책, 국가 보증대출과 보증가격, 에너지 정책 이유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운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3) 기구 문건

AIIB 기구에 대한 문건으로, 기업조달정책, 공공정보정책 및 사업계획 요약이 있다.

제 2 절 목적 및 회원국

1. 목 적

AIIB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프라와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아시아 내 인프라간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 다른 MDB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역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AIIB 협정 제1조). 이러한 AIIB의 목적은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³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아시아 인프라간 연계성 강화와 기존 MDB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자본의 지역내 투자를 증진하고, 지역 전체의 조화로운 경제성장과 저개발 회원국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여 재원을 사용하며, 지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기업 및 활동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AIIB 협정 제2조)

2. 회원국

AIIB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IBRD 또는 ADB의 회원국이어야 하고, AIIB에 가입한 회원국은 지역내 회원국과 지역외 회원국으로 구분된다.³⁶⁾(AIIB 협정 제3.1조) 따라서 IBRD 또는 ADB 회원국인 가

35)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약칭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서, 육상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一帶)와 해상을 중심으로 하는 “일로”(一路)를 통해 약 60 여개국, 44억 여명을 직접 연결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상모 등,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지역적 협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6, p.25. 이러한 일대일로 정책의 주요 추진대상 국가와 현재 및 향후 AIIB의 주요 수원국은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AIIB는 중국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36) 2016년 10월 현재, AIIB 회원국은 총 57개국으로, 지역내 회원국 37개국과 지역

입신청국은 총회의 특별다수결에 따른 승인(즉, 총투표권 1/2 이상 위원수의 1/2 찬성)이 있으면 AIIB에 가입할 수 있다.(AIIB 협정 제3.2조) 다만 주권이 없거나 자국의 국제 관계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가입 신청국이 자국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AIIB의 회원국이 제출하거나 동의해야 하는데,(AIIB 협정 제3.3조) 이는 홍콩, 마카오, 대만 등에 AIIB 가입과 관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탈퇴를 지정한 날 또는 탈퇴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협정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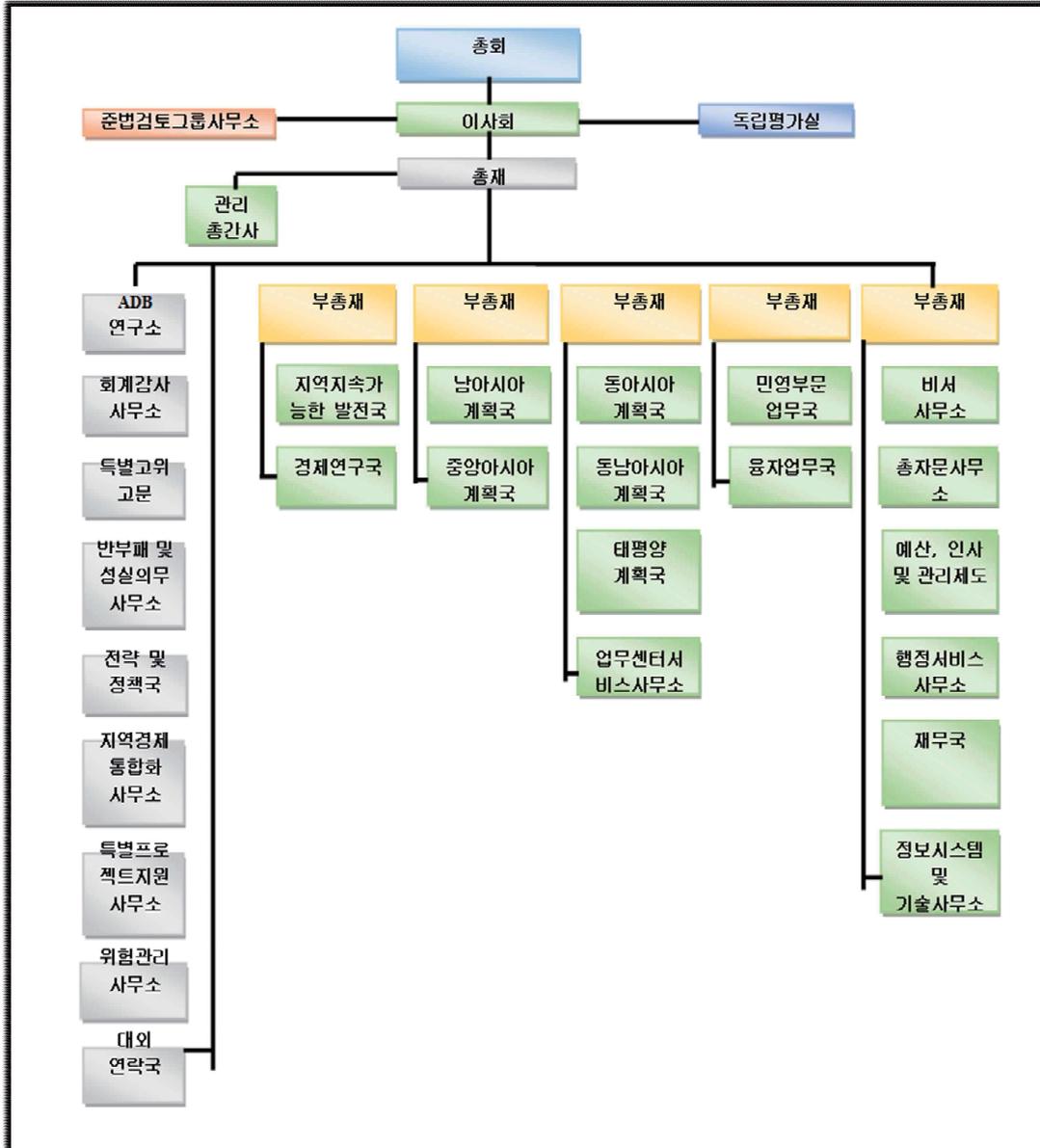
제 3 절 AIIB의 지배구조

AIIB의 주요조직으로는 총회, 이사회, 총재와 부총재 및 임직원으로 구성되는데,(협정 제21조) 이는 다른 MDB의 지배구조와도 유사하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조직에 대하여 설명한다.

외 회원국 2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6년 8월 31일 북미지역에 서는 처음으로 캐나다가 AIIB의 가입을 신청하였다.(http://www.aiib.org/html/2016/NEWS_0831/150.html. 2016. 10. 22 방문) 캐나다는 차기 총회에서 특별다수의 투표를 획득하면 58번째 회원국으로 AIIB에 가입하게 된다.

<그림 1> AIIB의 지배구조



출처 : 黄志勇, 《亚洲开发银行的运行分析及其对筹建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的启示》, 载《东南亚纵横》, 2013年第11期, 第7页

1. 총 회

총회(Board of Governors)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 1명과 대리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AIIB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연차총회에서 의장³⁷⁾이 선출된다.(협정 제22조)³⁸⁾ 총회는 다음의 11가지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이 이외의 사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일부 또는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협정 제23조)

<표 5> 총회의 전권사항(제23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규 회원국의 가입승인 및 가입 조건 결정 ② 수권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③ 회원국의 자격정지 ④ 이사회가 제시한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⑤ 이사선출 및 이사와 대리이사에 대한 경비 및 보수결정 ⑥ 총재의 선출, 자격정지 또는 해임, 총재의 보수 및 그 밖의 복무조건 결정 ⑦ 감사보고서 검토, 일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⑧ 은행의 준비금과 순이익의 할당 및 배분결정 ⑨ 협정개정 ⑩ 은행의 업무 종료 및 자산배분 결정 ⑪ 협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명백히 지정된 그 밖의 권한 |
|--|

37) 2016년 1월 16일-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연차총회에서 진리첸(金立群)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 회장이 초대 AIIB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http://www.aiib.org/html/aboutus/governance/Board_of_Governors/?show=1 (2016. 10. 16 방문)

38) 현재 48개국에서 위원과 대리위원을 임명하였다. 현재 총재는 진리첸이고, 한국은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리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다. 상세현황은 <http://www.aiib.org/html/aboutus/governance/governors/?show=1>. (2016. 10.16 방문)

여기에서 다른 MDB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 전권사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⁹⁾ 이처럼 AIIB의 총회의 전권사항은 다른 MDB의 전권사항과 일부 표현방식이 다른 뿐 대부분 규정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즉 따라서 총회의 전권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신규회원국의 가입, 수권자본금의 증감, 총재의 선출, 협정의 해석 및 개정, 업무의 종료 및 자산배분 결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AIIB와 다른 MDB의 총회 전권사항 비교

AIIB 총회의 전권사항	MDB				
	IBRD	ADB	AfDB	EBRD	IDB
신규 회원국의 가입허가와 가입조건의 결정	○	○		○	○
자본금의 증감	○	○	○	○	○
회원국의 자격정지	○	○		○	○
협정의 해석 및 이의 제기에 관한 결정	○	○		○	○
이사, 대리이사 등 보수와 재임기간 결정	○	○	○	○	○
총재선출, 자격정지, 보수 및 복무조적 결정		○	○	○	○
감사보고서, 대초대조표, 손익계산서 승인		○	○	○	○
준비금, 순이익 할당 배분경정		○			○
협정문 개정	○	○		○	○
업무의 종결과 자산배분	○	○	○	○	○
기타 총회의 권한으로 명백히 지정된 권한		○	○	○	

39) IBRD 협정 제5.2절, ADB 협정 제28조, AfDB 협정 제27조, EBRD 협정 제24조, IDB 협정 제8.2조

AIIB 총회의 전권사항		MDB				
		IBRD	ADB	AfDB	EBRD	IDB
규정 없음	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위한 일 반협정의 체결의 승인(이사회 승인사항)	○	○	○	○	○
	특별기금의 설립과 관리			○		

출처 : 각 MDB 협정문의 총회권한 관련 규정 정리

2. 이사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은행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는, 비상주(非常住) 조직⁴⁰⁾으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각 지역을 대표하는 12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중 9인은 지역내 회원국을 대표하고, 3인은 지역외 회원국을 대표한다.(협정 제25.1조)

각 이사(대리이사 포함)는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임기 2년으로 자신을 선출한 위원의 회원국 및 자신에게 투표를 양도한 위원의 회원국을 대표하게 되는데, 2명 이상의 이사 및 대리이사는 동일 국적일 수 없고, 대리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이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다.(제25.3조) 또한 이사회는 의장 또는 3인 이사의 요청으로 연중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의사정족수는 회원국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이다.(제27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협정 제26조)

- ① 회의사무 준비
- ② 정책수립, 주요한 운영과 재무정책과 이와 관련하여 총재에게 위임할 권한결정

40) 이사회의 비상주성과 AIIB의 설립 당시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논의한다.

제 3 장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과 주요 내용

- ③ 업무결정 및 이와 관련하여 총재에게 위임한 권한 결정
- ④ 정기적 경영·업무 감독, 적절한 감시체제 수립
- ⑤ 전략, 연례계획 및 예산 승인
- ⑥ 위원회 임명
- ⑦ 감사회계보고서 제출

<표 7> 이사회의 구성

이사	대리이사	선거구의 구성	
		창립회원국	창립서명국
Sulaiman M. AL-TURKI(사우디 아라비아)	Adel AL HOSANI(UAE) Bader Ahmed AL-QAYED(카타르)	요르단,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Ömer Ethem BAYAR(터키)	Omar Hamid KHAN(파키스탄) David LEZHAVA(조지아)	아제르바이젠, 부르나이, 조지아, 키르기스 공화국, 파키스탄, 터키	
Luis BALDUINO(브라질)	Yasser SOBHI(이집트)	이집트	브라질, 남아프리카
BOONCHAI Charassangsomboon(태국)	Mohammad ASIF-UZ-ZAMAN(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사, 몰디브, 네팔, 태국	필리핀
Shixin CHEN(중국)	WU Guoqi(중국)	중국	
Andin HADIYANTO(인도네시아)	Angkhansada MOUANGKHAM(라오스) Priyantha RATHNAYAKE(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제 3 장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과 주요 내용

이사	대리이사	선거구의 구성	
		창립회원국	창립서명국
Kunil HWANG(한국)	Yoel NAVEH(이스라엘)	이스라엘, 몽골	우즈베키스탄
Christopher LEGG(호주)	Alvin LIM(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Vanessa MACDOUGALL(영국)	Radek PYFFEL(폴란드) Michelle GYSIN(스위스)	덴마크, 아이스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Timur MAKSIMOV(러시아)	Nurym Ayazbayev(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이란
Nikolai PUTSCHER(독일)	Philippe BAUDRY(프랑스) Irene JANSEN(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Dinesh SHARMA(인도)	Raj KUMAR(인도)	인도	

출처 : AIIB 홈페이지 (http://www.aiib.org/html/aboutus/governance/Board_of_Directors_/BOD_Members/?show=1) (2016. 10. 22 방문)

3. 총재와 임직원

총재(President)는 은행의 법적 대표, 이사회의 의장 및 은행직원의 수장으로서(협정 제29.4조),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총회의 최대다수결투표(총투표권 $\frac{3}{4}$ 이상 위원의 $\frac{2}{3}$ 찬성)에 의해 선출된다. (협정 제29.1조-제29.2조) 총재는 가부동수의 경우의 결정투표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협정 제29.3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임명하는데,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재임하고, AIIB의 행정에 있어 이사회가 결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기능을 수행한다.(협정 제30조)

제 4 절 의사결정

1. 의사정족수

총회는 연차총회가 정하거나 이사회가 소집(5개의 회원국에 의한 요청)하는 경우 개최되고, 위원의 과반수가 회원국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모든 회의의 정족수를 구성한다.(협정 제24조)

2. 수권자본과 지분율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로서, 납입주식(200억 달러)과 요구불주식(800억 달러)으로 구분되는데, 총회의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해 증액될 수 있다.(협정 제4조) 수권자본은 아시아 지역내 국가가 75%를 차지하며, 지역외 국가가 25%를 차지하고, 총회의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그 청약액을 증액할 수 있다.(협정 제5조)

3. 투표권

각 회원국의 총 투표권은 회원국의 기본투표수, 지분투표수, 창립회원국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협정 제28조)

<표 8> 총 투표권수(협정 제28.1조)

구 분	투표수
기본투표	총 투표권(기본투표수, 지분투표수 및 창립회원국투표수의 총계)수의 12%를 각 회원국에게 균등배분하여 산출되는 투표수
지분투표	해당 회원국이 보유하는 은행의 자본금 주식 수
창립회원국투표	600개의 창립회원국투표수가 창립회원국에게 할당

총회의 투표에 있어 각 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수를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의 의사결정방식은 일반다수결 투표, 특별다수결 투표, 최대다수결 투표 및 만장일치로 나누어진다. 먼저 일단다수결투표는 행사된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특별다수결투표는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총 위원 수의 과반수의 승낙투표로 결정되며, 최대다수결투표는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총 위원 수의 3분의 2의 승낙투표로 결정되는데,(제28.2조), 유형별 투표방법과 해당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9> 각 유형별 투표방법과 주요 내용

투표유형	관련조문	해당내용
만장일치	제53.2조	은행탈퇴, 주식에 대한 회원국 채무 한도, 자본금 매입권 관련 규정의 개정
최대다수결투표 (Super Majority) (총투표권 ¾ 이상 위원의 ⅔ 찬성)	제4.3조	수권자본금 변경
	제5.2조	청약자본금 감액
	제5.3조	청약자본금 증액
	제11.1조	비회국 원조제공
	제11.2조	기타 금융제공
	제12.1조	청약자금, 준비금 등의 한도 변경
	제18.1조	순이익 할당 결정
	제25.2조	이사회 규모 및 구성변경
	제27.1조	이사회 상주 결정
	제29.1조	총재선출
	제29.2조	총재의 자격정지 및 해임
	제38.1조	회원국의 자격정지 및 회복
	제41.1조	은행업무 종료
	제43.1조	자산배분 결정
제53.1조	협정문개정	
특별다수결 (Special Majority) (총투표권 ½ 이상 위원수의 ½ 찬성)	제3.2조	IBRD, ADB회원국의 신규회원국 가입
	제7.1조	청약주식 액면가의 변경발행
	제16.8조	부속기관 설립
	제58.1조	기탁일의 변경
일반다수결 (Majority) (행사된 투표권의 ½ 이상 찬성)	제28.2조 1호	기타 총회의 모든 사항

출처 : 협정 조문을 참고하여 작성

4. 각 회원국별 지분율과 투표권

AIIB는 수권자본금 1,000억 달러와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통해 인프라 관련 용자·지분참여·보증·기술원조를 수행하게 되는데, 초기 500억 달러로 시작하여 1,000억 달러로 증액할 계획이었으나 참가희망국이 늘어나면서 자본금 규모를 1,000억 달러로 확대하였다.⁴¹⁾ 납입자본금과 대기자본금(Callable Capital : AIIB 요구가 있을 경우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의 비율은 20:80이며 역내 지분율은 75% 이상이고, 창립회원국 중 일부가 배분된 지분의 일부를 인수 포기하여 출범 시 청약자본금은 982억 달러이며 미인수 지분은 총회 의결에 의해 추후 배분될 예정이다.⁴²⁾

AIIB는 다른 MDB와 유사하게 자기자본 및 채권 발행, 투자이익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용자·보증·지분투자·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운용하는데, 먼저 운용 한도는 지원자금 잔액이 자본금, 준비금 및 유보이익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총회 의결을 통해 250%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대상은 회원국 정부, 기관, 기업 등이며, 2016~18년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한 공공부문에 70~80%, 민간부문에 20~30%를 지원할 예정이나, 향후 민간부문의 비중 확대 예정이며, 주요 투자 산업으로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물류, 지속가능 에너지, 전력, 수자원, 농촌 개발 등이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교육과

41) 우리나라 지분율은 3.81%로 역내 회원국 가운데 4위이며, 전체 회원국 중에 중국(30.34%),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에 이어 5위로서, 우리나라에 배당된 자본금은 37억 4,000만 달러이며 실제 납입 금액은 7억 5,000만 달러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자본금을 분할 납입할 계획이다. 이봉걸, 송송이, “AIIB 출범과 우리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방안”, 『Trade Focus』, Vol.14 No.52, 2015. 12, p.2.

42) 우리나라 지분율은 3.81%로 역내 회원국 가운데 4위이며, 전체 회원국 중에 중국(30.34%),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에 이어 5위로서, 우리나라에 배당된 자본금은 37억 4,000만 달러이며 실제 납입 금액은 7억 5,000만 달러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자본금을 분할 납입할 계획이다. 이봉걸, 송송이, “AIIB 출범과 우리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방안”, 『Trade Focus』, Vol.14 No.52, 2015. 12, p.2.

환경 사업에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³⁾

<표 10> 회원국별 지분율 및 투표권

지역내 회원국					
순위	국 가	주식수	자본청약액 (백만달러)	지분율	투표권
1	중국	297,804	29,780.40	30.34%	26.06%
2	인도	83,673	8,367.30	8.52%	7.51%
3	러시아	65,362	6,536.20	6.66%	5.93%
4	한국	37,388	3,738.80	3.81%	3.50%
5	호주	36,912	3,691.20	3.76%	3.46%
6	인도네시아	33,607	3,360.70	3.42%	3.17%
7	터키	26,099	2,609.90	2.66%	2.52%
8	사우디 아라비아	25,446	2,544.60	2.59%	2.47%
9	이란	15,808	1,580.80	1.61%	1.63%
10	태국	14,275	1,427.50	1.45%	1.50%
11	UAE	11,857	1,185.70	1.21%	1.29%
12	파키스탄	10,341	1,034.10	1.05%	1.16%
13	필리핀	9,791	979.1	1.00%	1.11%
14	이스라엘	7,499	749.9	0.76%	0.91%
15	카자흐스탄	7,293	729.3	0.74%	0.89%
16	베트남	6,633	663.3	0.68%	0.84%
17	방글라데쉬	6,605	660.5	0.67%	0.83%
18	카타르	6,044	604.4	0.62%	0.79%
19	쿠웨이트	5,360	536	0.55%	0.73%
20	뉴질랜드	4,615	461.5	0.47%	0.66%
21	스리랑카	2,690	269	0.27%	0.50%
22	미얀마	2,645	264.5	0.27%	0.49%
23	오만	2,592	259.2	0.26%	0.49%
24	아제르바이젠	2,541	254.1	0.26%	0.48%
25	싱가포르	2,500	250	0.25%	0.48%
26	우즈베키스탄	2,198	219.8	0.22%	0.45%
27	요르단	1,192	119.2	0.12%	0.37%
28	말레이시아	1,095	109.5	0.11%	0.36%
29	네팔	809	80.9	0.08%	0.33%
30	콜롬비아	623	62.3	0.06%	0.32%

43) 이현태, 김준영, “A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25(2016),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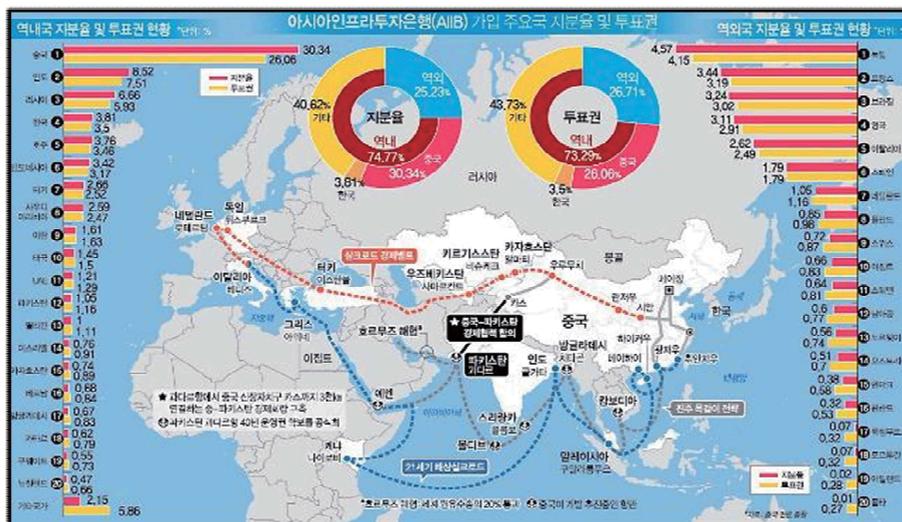
제 3 장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과 주요 내용

31	조지아	539	53.9	0.05%	0.31%
32	부르나이	524	52.4	0.05%	0.31%
33	라오	430	43	0.04%	0.30%
34	몰골	411	41.1	0.04%	0.30%
35	타지키스탄	309	30.9	0.03%	0.29%
36	키르기즈	268	26.8	0.03%	0.29%
37	몰디브	72	7.2	0.01%	0.27%
	미할당분	16,150	1,615.00		
역내국 합계		733,850	73,385	74.77%	73.29%
지역외 회원국					
순위	국 가	주식수	자본청약액 (백만달러)	지분율	투표권
1	독일	44,842	4,484.20	4.57%	4.15%
2	프랑스	33,756	3,375.60	3.44%	3.19%
3	브라질	31,810	3,181.00	3.24%	3.02%
4	영국	30,547	3,054.70	3.11%	2.91%
5	이탈리아	25,718	2,571.80	2.62%	2.49%
6	스페인	17,615	1,761.50	1.79%	1.79%
7	네덜란드	10,313	1,031.30	1.05%	1.16%
8	폴란드	8,318	831.8	0.85%	0.98%
9	스위스	7,064	706.4	0.72%	0.87%
10	이집트	6,505	650.5	0.66%	0.83%
11	스웨덴	6,300	630	0.64%	0.81%
12	남아공	5,905	590.5	0.60%	0.77%
13	노르웨이	5,506	550.6	0.56%	0.74%
14	오스트리아	5,008	500.8	0.51%	0.70%
15	덴마크	3,695	369.5	0.38%	0.58%
16	핀란드	3,103	310.3	0.32%	0.53%
17	룩셈부르크	697	69.7	0.07%	0.32%
18	포르투갈	650	65	0.07%	0.32%
19	아이슬란드	176	17.6	0.02%	0.28%
20	말타	136	13.6	0.01%	0.27%
	미할당분	2,336	233.6		
역외국 합계		712,412	71,241.2	25.23%	26.71%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⁴⁴⁾ “최 부총리, AIIB 협정문 서명…한국 지분율 3.81%” 와 AIIB 협정문에서 재구성

44) http://www.mosf.go.kr/nw/mosfnw/neslistDetail.do?menuNo=4030000&searchNttId1=OLD_4095157&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3(2016년 10월 16일 방문)

<그림 2> AIIB 가입회원국 지분율 및 투표권 현황



출처 : “닷올린 AIIB, 7300억달러 인프라시장 열린다...AIIB 통해 북한 지원할 수도”, 아주경제 2015.6.29.일자, <http://www.ajunews.com/view/20150629120353663> (2016년 10월 26일 방문)

제 5 절 주요업무

1. 업무유형

AIIB의 업무는 통상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업무와 특별기금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업무가 있고, 이러한 재원은 상호 완전히 분리되어 보유, 사용, 약정, 투자 및 처분되며, 어떤 경우에도 은행의 통상재원은 특별업무 또는 기타 손실 또는 채무의 충족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협정 제8조)

2. 업무방법

AIIB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협정 제11.2조)

- ① 직접 대출, 협조용자
- ② 기관 또는 기업의 지분자본에 대한 자금 투자
- ③ 경제발전을 위한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 보증
- ④ 약정에 따른 특별기금재원 배정
- ⑤ 기술원조
- ⑥ 기타 금융 제공

3. 업무원칙

AIIB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협정 제13조)

- ① 건전한 은행업의 원칙 준수
- ② 특정사업(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제공, 지분투자 및 기술원조
- ③ 회원국이 반대할 경우, 회원국 영역내 자금제공 금지
- ④ 운영 및 재무정책 준수
- ⑤ 자금제공신청 심사시, 수혜자의 금융 또는 편의능력 고려

- ⑥ 자금제공 또는 보증시, 위험에 적합한 금융 조건 판단
- ⑧ 재화와 용역 조달시 국가별 제한 금지
- ⑨ 금융의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 채택
- ⑩ 특정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의 불균형적 사용 금지
- ⑪ 지분자본 투자시 합리적인 분산 유지

4. 특별기금

AIIB는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특별기금을 수용할 수 있는데, 특별기금의 설정,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특별 규칙과 규정을 채택해야하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협정 제17조)

- ① 특별기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수용한 자금
- ② 특별기금 운영 규칙에 따라 특별기금재원으로부터 자금조달된 대출, 보증 및 어떤 지분 투자의 수익금과 관련하여 수취된 자금
- ③ 특별기금재원의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입
- ④ 특별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재원

5. 업무의 중단과 종료

업무의 종료는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승인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료된다.(협정 제41조) 다만 비상시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신규 대출, 보증, 지분 투자 및 기타 금융에 대한 업무를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협정 제40조)

제 6 절 특권과 면제

1. 사법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

AIIB는 완전한 법인격과 계약체결, 재산취득 및 처분능력,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거나 이에 대응하며, 은행의 목적과 활동이 필요한 행위를 할 능력을 가진다.

AIIB는 모든 법적인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자금의 모집, 보증, 물품의 구입과 판매, 증권의 배서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소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은행이 사무소를 가지는 국가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제소되어야 한다.(협정 제46.1조) 이 경우에도 회원국, 회원국의 기고나, 회원국 정부를 대리하는 기관 또는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은행을 제소할 수 없고, 협정, 내부규칙, 은행의 규정, 은행과 회원국이 맺는 계약 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며,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최종판결의 송달 이전까지는 압류, 강제집행에서 면제되며, 행정적, 입법적 조치에 의한 압수, 징발, 몰수, 수용에서도 면제된다.(협정 제46.2조, 제46.3조, 제47조) 또한 AIIB의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범위내에서는 그 재산, 자산에 대하여 제한, 규제, 통제 및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협정 제48조)

2. 임직원의 면제와 특권

AIIB의 임직원들도 면제와 특권을 누린다. 임직원은 공적인 자격에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인 절차에서 면제되며,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국이 타국의 유사한 은행의 대표,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동일한 면제를 이민규제, 외국인등록, 병역, 환율규제와 관련하여 인정받는다.(협정 제50조)

3. 특권과 포기

AIIB는 재산, 자산, 수입, 운영, 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조세 및 관세에서 면제된다.(협정 제51조) 또한 이러한 특권과 면제는 최선의 이익에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포기할 수 있다.(협정 제52조)

제 7 절 분쟁해결

1. 분쟁의 범위

AIIB의 분쟁은 AIIB각 회원국간 및 AIIB와 각 회원국이 투자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 주로 해당된다. 회원국이 관련주체에 대한 제소, 회원국이 AIIB가 공포한 규범적 문서에 대한 이해·적용·효력으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 AIIB관련 규범적 문서로 인하여 타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 야기된 분쟁, AIIB투자프로젝트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분쟁발생 후 법률의 적용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⁴⁵⁾ 분쟁해결기구의 청구인은 AIIB 본 기구, 회원국의 본국이 될 수 있고, 회원국이 실시한 AIIB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 등도 주체가 될 수 있다.⁴⁶⁾ AIIB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은 분쟁당사자의 유형에 따라 ① 회원국과 AIIB간에 발생하는 분쟁과 ② 회원국과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구분하고, 분쟁의 대상내용에 따라 ①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② 회원국의 지위상실 또는 AIIB 업무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45) 强力, “亚投行面临的法律问题与对策”, 载《第二节长安与罗马两个文明的对话国际学术研讨会》, 2015.06.02. p.113

46) 앞의 각주 참조

2.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따른 분쟁

AIIB는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① 회원국과 AIIB간 또는 ② 회원국과 회원국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이사회가 결정한다.(협정 제54.1조) 다만 이러한 이사회 결정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협정 54.2조 전단). 다만, 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다.(협정 54.2조 후단).

3. 회원국의 지위상실 또는 업무의 종료에 따른 분쟁

AIIB는 회원국과 AIIB간에, 회원국의 지위상실 또는 AIIB 업무의 종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회나 이사회가 아닌 제3의 기관인 중재재판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55조 1단) 이러한 중재재판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데, 1명은 AIIB가 임명하고, 다른 1명은 해당 국가가 임명하며, 세 번째 1명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임명하는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임명하거나 총회가 채택하는 규정에 명시되는 그 밖의 당국이 임명한다.(협정 제55조 2단) 중재판정은 중재인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고, 당사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다.(협정 제55조 2단)

제 4 장 AIIB 지배구조와 법적 과제

제 1 절 문제의 소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제2장 제4절 AIIB의 당면과제), AIIB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AIIB의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와 AIIB의 운영에 있어서 중국의 독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이사회의 비상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분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투표권 문제로서, 회원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이러한 투표권문제가 다수의 국가들에 의해 수용되고 지지되는 등의 합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IMF에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투표권 메커니즘에서 총 38.32%의 비율을 차지하여 절대적인 주도권을 누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16.74%의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독점지배국가로서, 부결권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AIIB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른 MDB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AIIB의 내용을 분석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CMIM)을 추가하여 함께 분석하도록 한다.

제 2 절 의사결정과 투표권

1. 기존 MDB와의 비교

(1) IBRD의 의사결정권과 투표권

IBRD에서 인정하는 총회의 유형별 투표방법과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IBRD의 각 유형별 투표방법과 주요 내용

투표유형	관련조문	해당내용
총투표1/4	제5.2조 c	의사정족수
위원의 과반수 행사투표의 관수	제6.2조	회원국의 자격정지
	제6.4조	응모액의 분배
총투표의 과반수	제2.4조	액면가격의 변경
	제5.3조b	일반적인 경우
총투표의 3/4	제2.3조	증자결의
	제2.2조b	자본금증액 결의
	제6.3조	IMF자격 회원국의 지위유지
총투표 4/5	제5.4조 b	이사수의 증감
총투표 4/5를 가진 회원국의 3/5 찬성	제8조a	협정문 개정

참고로, 국제통화기금을 예로 들면, 국제통화기금에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투표권 메커니즘에서 총 38.32%의 비율을 차지하고, 미국은 16.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결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IMF 불합리한 구성으로 인해 2010년에 IMF가 지배구조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2) ADB의 의사결정과 투표권

ADB에서 인정하는 총회의 유형별 투표방법과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 ADB의 각 유형별 투표방법과 주요 내용

투표유형	관련조문	해당내용
총투표의 2/3 이상을 행사하는 과반수 위원	제29조	의사정족수
총투표권 3/4 행사위원 2/3	제3.2조	회원국의 가입
	제4.3조	수권자본의 증액
	제16.1조	수수료 요금 결정
	제19조	특별기금결정
	제28.4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결정
	제42.1조	회원국의 자격정지
	제45.1조	업무종결
	제47.1조	자산분재
총투표권 1/2 행사위원 1/2	제59.1조	협정문 개정
	제5.4조	주식의 액면가 발행 금지
	제11조	업무의 시작개시
총투표권의 2/3	제34조	총재선출
	제24.2조	비회원국의 통화매입
총투표 2/3 행사투표 2/3	제34.2조	총재 퇴직 결정

2. CMIM과의 비교

역내 국가들은 환율의 안정, 역내 자본 이동 및 금융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2005 년 아세안+3(APT) 재무장관 회담에서 기존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합의되었으며, 이후 확대발전을 위한 논의 끝에 2009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로 출범에 합의하였다. 여기서 기존 MDB와 비교하여 주목할 것은 CMIM의 지배구조이다.

<표 13> CMIM의 분담금과 투표권

	분담금(억 달러: %)	인출 비율	투표권(%)
한국	192(16)	1	14.77
중국	384(32)	0.5	28.41
일본	384(32)	0.5	28.41
인도네시아	47.7(3.97)	2.5	4.52
태국	47.7(3.97)	2.5	4.52
말레이시아	47.7(3.97)	2.5	4.52
싱가포르	47.7(3.97)	2.5	4.52
필리핀	36.8(3.07)	2.5	3.75
베트남	10(0.83)	5	1.85
캄보디아	1.2(0.1)	5	1.22
미얀마	0.6(0.05)	5	1.18
브루나이	0.3(0.02)	5	1.16
라오스	0.3(0.02)	5	1.16
합계	1,200(100)		100

출처 : 이승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 거버넌스” 『EAI NSP Report 47』, 2011, p.13. (2016. 10. 22. 방문)

먼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다른 MDB와 유사하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요 안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가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투표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위의 표를 살펴보면, 어느 국가도 이러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대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합도 3분의 2의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합의의 도출에 있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느 특정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정 2개국도 공동으로도 특정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는, 소위 말하는 황금율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⁷⁾

47)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곽동진, 김현, “국제금융레짐으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성립과정 분석” 아태연구 제21권 제4호, 2014, pp.91.-100 참조.

<표 14> 다자개발은행 지배구조

	AIB	WB	ADB	IDB	EBRD
설립연도	2015년	1944년	1966년	1959년	1991년
본부	중국 베이징	미국 워싱턴	필리핀 마닐라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설립목적	- 아시아 역내 인프라 개발수요 부응 - 경제통합 촉진	- 전쟁 피해복구자금 지원, - 개도국 개발자금 지원	- 아태지역 경제성장 - 경제협력 촉진	- 중남미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촉진 - 지역통합	- 중동구체제 전환 촉진 - 경제발전에 기여
회원국	57개국	188개국 (IBRD 기준)	67개국 (역내 48, 역외 19)	48개국	64개국 및 EU, EIB
주요국 지분율	중국 30.34% 인도 8.52% 러시아 6.66% 독일 4.57%	미국 17.1% 일본 7.9% 중국 5.1% 한국 1.7%	일본 15.7% 미국 15.6% 중국 6.5% 한국 5.1%	미국 30.0% 브라질 11.2% 아르헨티나 11.2% 멕시코 7.2% 일본 5.0%	미국 10.1% 프랑스 8.6% 독일 8.6% 이탈리아 8.6% 일본 8.6%

	AIB	WB	ADB	IDB	EBRD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of Governors (총회) ·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 Management(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of Governors · Board of Directors ·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of Governors · Board of Directors ·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of Governors ·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of Governors · Board of Directors · Executive Committee
수권자본금	1,000억 USD(잠정)	2,328억 USD	1,638억 USD	USD 170.9billion	EUR 30billion
투표권	20%(기본)+80%(자본금비율) 역내 75%, 역외 25%	5.5%(basic vote) +84.5%(share vote)	20%(기본)+80%(자본금비율) 역내 65%, 역외 35%	역내 차입(50.01%) 비차입 회원국(34.007%) 역외 비차입 회원국 (15.979%) (2009년 2월 기준) (5) 현장(Charter) 개정에는 총 투표권 3/4 찬성 필요	비차입회원국의 자본금 지분이 80% 상회

출처 : 임호열 등 4인, “A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Vol. 15 No. 12, 2015, p.12. ;Raphaelle Faure, etc,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 A short guide”, December 2015, p.2.(<https://www.shareweb.ch/site/Multilateral-Institutions/Documents/Short%20guide%20to%20multilateral%20development%20banks.pdf>)의 내용을 기초로 재작성 (2016. 10. 22 방문)

3. 소 결

AIIB의 최대주주는 중국으로서, 총 지분율은 30.34%, 투표권 26.06%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권자본금 변경, 총재선출, 회원국의 자격정지 및 회보 등과 같이 절대다수결의 투표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부권의 존재 및 행사와 관련하여 향후 AIIB의 운영에 있어서 최대주주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일 것으로 전망된다.⁴⁸⁾ 이러한 중국의 실질적인 거부권의 존재 및 행사가능성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중국은 AIIB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고 유럽 내 미국 우방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AIIB 가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⁹⁾ 또한 향후에 미국이나 일본 등 특정 국가가 새롭게 AIIB의 회원국이 되려면 총회의 특별다수결 (Special Majority vote)에 총투표권 1/2 이상 위원수의 1/2 찬성이 필요하지만, 만약 일본과 미국이 추가적으로 AIIB에 가입하게 될 경우, AIIB 회원국 간 투표권과 지분율의 분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⁵⁰⁾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CMIM에 있어서 운영되는 지배구조는 상당히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48) 최원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 : 평가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09, p.16.

49) Wei, L. and Davis, B., “중국 Forgoes Veto Power at New Bank to Win Key European Nations’ Support,” Wall Street Journal. (March 23), 2015; 임호열 등 4인,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Vol. 15 No. 12, 2015, p.12.에서 재인용

50) 최원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 : 평가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09, p.16.

<표 15> 다자개발은행 주요국의 지분율

순위	AIIB		IBRD		ADB		EBRD		IDB		AFDB		IMF	
	중국	30.34	미국	17.07	일본	15.68	미국	10.11	미국	29.75	나이지리아	9.20	미국	17.69
2	인도	8.52	일본	7.89	미국	15.57	영국	8.62	아르헨티나	11.09	미국	6.07	일본	6.56
3	러시아	6.66	중국	5.09	중국	6.47	일본	8.62	브라질	11.09	이론	5.57	독일	6.11
4	독일	4.57	독일	4.61	인도	6.36	이탈리아	8.62	멕시코	7.13	이집트	5.28	프랑스	4.50
5	한국	3.81	프랑스	4.13	호주	5.81	독일	8.62	일본	4.96	캐나다	4.59	영국	4.50
6	호주	3.76	영국	4.13	캐나다	5.25	프랑스	8.62	캐나다	4.93	독일	4.18	중국	3.99
7	프랑스	3.44	인도	3.20	인도네시아	5.13	러시아	4.05	베네수엘라	4.03	알제리아	4.05	이탈리아	3.31
8	인도네시아	3.42	사우디	3.17	한국	5.06	스페인	3.44	콜롬비아	3.04	남아공	4.02	사우디	2.93
9	브라질	3.24	러시아	2.97	독일	4.35	유럽연합	3.44	칠레	3.04	프랑스	3.81	러시아	2.49
10	영국	3.11	캐나다	2.78	말레이시아	2.74	EIB	3.03	스페인	1.93	모로코	3.75	인도	2.44

출처 : Rebecca M. Nels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2, 2015, pp.9-10. (<http://www.fas.org/sgp/crs/row/R41170.pdf>) 2016. 10. 22 방문

<표 16> 다자개발은행 10대 자금수혜국

IBRD		IDA		AfDB		ADB		ADF		EBRD		IDB	
인도	2,098	에이오피아	600	나이지리아	1,388	인도	2,835	파키스탄	563	터키	1,692	브라질	2,241
중국	1,822	방글라데쉬	375	Multinational	1,162	중국	1,820	방글라데쉬	493	우크라이나	1,469	멕시코	2,054
콜롬비아	1,400	콩고	220	앙골라	959	필리핀	975	베트남	409	러시아	738	콜롬비아	932
이집트	1,400	인도	179	남아공	341	파키스탄	820	네팔	325	폴란드	721	에콰도르	866
우크라이나	1,345	우간다	150	모로코	337	베트남	740	캄보디아	226	이집트	720	아르헨티나	660
아르헨티나	1,337	탄자니아	122	케냐	275	인도네시아	554	스리랑카	188	루마니아	719	도미니카	578
터키	1,150	볼리비아	100	콩고	268	방글라데쉬	475	키르기스스탄	169	카자흐스탄	699	페루	445
모로코	1,055	미얀마	100	카메룬	208	스리랑카	344	아프가니스탄	149	세르비아	550	우르과이	343
인도네시아	1,000	르완다	100	우간다	185	아제르바이젠	315	부탄	101	크로아티아	362	파나마	310
폴란드	966	카메룬	100	르완다	144	우즈베키스탄	300	아르메니아	86	마케도니아	306	파라과이	301

출처 : Rebecca M. Nels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2, 2015, p.7. (<http://www.fas.org/sgp/crs/row/R41170.pdf>)

제 3 절 이사회의 상주성

AIIB의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일반적으로 상주(常住)하지 아니하고 기능한다.(협정 제27조) AIIB의 지배구조가 기존 국제개발은행과 다른 점은 총재를 비롯한 운영진의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이사회가 AIIB 본부에 위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1년에 몇 차례(최소 분기별 개최)의 이사회 회의 개최 시에만 소집되는 비상주(non-resident) 이사회라는⁵¹⁾ 점이다.

AIIB가 상주 이사회를 두지 않고, 이사회의 권한을 기존 국제개발은행에 비해 약화 시킨 것은 신속한 대출 및 투자 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⁵²⁾, 이는 대출 및 투자의 승인 기간이 너무나 길다는 것이 세계은행이나 ADB 등 기존 국제개발은행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제개발은행(MDB)은 상임이사회를 운영 중이지만, AIIB는 상임이사회를 두지 않을 계획인바, 비상임이사회만 있어도 효율적으로 정책 수립과 은행 운영 감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⁵³⁾ 이는 중국 정부가 “AIIB가 기존 국제기구의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거버넌스 문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회의 비상주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협정 제27조에서는 총회의 최대다수결투표에 따라 상주하도록 규정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1) 이승주,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국제정치: 거대 FTA와 AIIB의 사례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No. 2015-22, p.10.

52) 최원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 : 평가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09, pp.14-15.

53) 앞의 각주 참조

제 4 절 감독체제

오늘날 회사내부의 기본적 지배구조의 형태의 측면에서 볼 때, 주주 총회, 이사회, 감사 삼자로 구축된 의사결정, 집행 및 감독체제는 효과적인 기업의 법률형태이다.

AIIB 협정 제26.4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은행의 경영과 업무를 감독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투명성, 공개성, 독립성, 그리고 책임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감시 체제를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감독체제가 이사회에 의하여 적절히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AIIB의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예를 들어 IMF 체제에 있어 적절한 감독체계가 구성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이에 대한 비판과 더욱이 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지어 IMF 불신론 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AIIB협정이 이러한 감독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측면이다. 따라서 AIIB는 독립성을 지닌 전문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독립적이며 권위를 갖춘 감독권한을 반드시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기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총회, 이사회 및 임직원은 일상 업무운영에서의 위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사회 및 임직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직권남용·직무유기의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총회는 이사회에게, 이사회는 임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위임방안 및 집행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회원국간 AIIB의 투자문제로 발생한 분쟁을 수리하고 최종판단을 할 권한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총회에 대해 사업보고를 실시하는 것⁵⁴⁾ 등이다.

54) 强力, “亚投行面临的法律问题与对策”, 载《第二节长安与罗马两个文明的对话国际学术研讨会》, 2015.06.02. p.108.

제 5 장 AIIB와 분쟁해결

제 1 절 문제의 소재

AIIB협정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조약법 협약’)과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라⁵⁵⁾ 해석되어야 하는 국제기구이다. AIIB는 국제기구로서 원칙적으로 AIIB의 협정 아래 설립되기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인 주권국가들에 한하여 참여가 허용된다.⁵⁶⁾ 반면, ADB의 회원국인 비주권국가들이 AIIB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있는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어야만 회원국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⁵⁷⁾ 이러한 협정 아래, IBRD와 ADB의 회원국이 아닌 특별행정구인 마카오를 제외하고, ADB의 회원국인 홍콩과 대만은 중국의 동의를 얻어 AIIB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AIIB는 높은 수준의 회원제도를 가진 국제기구로 여겨질 수 있다.

AIIB는 아시아지역에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이다. 운영제도는 대체로 정책적인 성향이 있으나, 어느 정도는 상거래의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정책과 상거래의 혼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지만, AIIB 협정은 AIIB와 비정부 당사자간의 사법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항들도 있지만, 일부 조항들은 회원국들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AIIB에 의해 투자되는 특정 프로젝트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정부중심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55)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5조(국제기구를 성립시키는 조약 및 국제기구내에서 채택되는 조약) 이 협약은 국제기구의 관계규칙을 침해함이 없이 국제기구의 성립 문서가 되는 조약과 국제기구내에서 채택되는 조약에 적용된다.

56) AIIB 협정 제3.1조

57) AIIB 협정 제3.3조

지로, AIIB 협정문 제14.2조⁵⁸⁾에 규정된 것처럼 보증과 거래들은 대부분 사적 특수성을 지닌 AIIB 협정문 제45조⁵⁹⁾에 의해 수행된다. 이처럼 AIIB 협정문의 해석과 적용은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해석과 원칙들의 규칙은 무엇인가, 둘째, 누가 AIIB 협정문의 조항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AIIB만의 특성과 각 조항들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 모두가 AIIB 협정문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AIIB 협정의 조항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국제법적 규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IIB협정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사적 관계의 분쟁을 해석하고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국제법적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 AIIB 협정의 특정 행위들은 AIIB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내법적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IIB 협정의 해석은 적용가능한 적절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 특정 상황하에서는 국제법과 함께 보충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조약해석을 위한 국제법은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26조⁶⁰⁾, 제27조⁶¹⁾, 제31조⁶²⁾, 제32조⁶³⁾ 및 제53조⁶⁴⁾가 있

58) AIIB 협정 제14.2조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의 수혜자가 회원국 자체가 아닌 경우, 은행은 바람직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영역내에서 관련 사업이 수행되는 회원국 또는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회원국의 공공기관 또는 부속기관에, 그 대출 조건에 따른 대출의 원금 상환과 이자 및 그 밖의 수수료의 지불을 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9) AIIB 협정 제45조(은행의 지위) 은행은 온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다음의 온전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① 계약의 체결, ②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③ 법적 소송 절차의 개시 및 그에 대한 대응, ④ 은행의 목적과 활동에 필요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조치.

60)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26조 :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61)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26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 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2)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

다. 이중에서 제31조와 제32조는 조약 해석을 위한 기본원칙이고, 다른 조항들은 조약의 실행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이다.

국내법의 보충적 역할은 AIIB협정의 일부 조항에서 볼 수 있는데, 즉 사적 성격을 지닌 특정거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IIB 협정문 제14.2조는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의 수혜자가 회원국 자체가 아닌 경우, 은행은 바람직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영역내에서 관련 사업이 수행되는 회원국 또는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회원국의 공공기관 또는 부속기관에, 그 대출 조건에 따른 대출의 원금 상환과 이자 및 그 밖의 수수료의 지불을 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부속기관에서 제공한 보증은 자연

-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협의
 -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 63)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
-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64)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53조(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다.

스럽게 상업적인 성격이 크고, 이는 당사자에 의해 선택되거나 또는 분쟁을 다루는 법원에 의해 적용될 국내법하에서 집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과 보증기관이 이러한 보증의 집행과 관련된 분쟁에 연루되면, 이러한 문제는 국내법적 영역에 해당한다. 동시에 AIIB 협정 제14.2조에서 야기된 분쟁의 해결은 AIIB 협정에서 배제된다. 이는 제 54조가 그러한 비준수 보증에 대하여 특정 국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사회나 총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제55조도 이러한 분쟁을 중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왜 국내법이 AIIB의 운영과 AIIB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또 다른 예로, 은행이 계약과 부동산 거래와 같은 수많은 민사거래를 수행하는 점을 허용한 제45조이다. 만약 이러한 거래로부터 어떠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AIIB협정의 제54조와 제55조 하에서 논의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은 국내법적인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국제법과 국내법이 AIIB 협정의 해석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이러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찾아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AIIB 협정의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IB 협정에서 분쟁해결과 관계가 있는 규정은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조항이 있다. 첫째, 제54조로서이다. 즉 협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문제는 AIIB의 이사회가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종 해석을 위해서는 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제55조이다. 즉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분쟁이 있는데, ①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와 AIIB간의 갈등과 ② 운영이나 프로젝트의 중지 또는 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중재를 받도록 하는 은행의 결정과 회원국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AIIB의 분쟁해결방법은 상당히 불명확하다. 먼저 AIIB 협정을 해석할 때, 이사회와 총회가 법적 용어와 비엔나 조약법 협약상의 원칙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법조인이 이사회와 총회를 상당히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종속적인 지위로 인하여, 이사회와 총회가 AIIB 협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이사회와 위원회의 현재 의사결정과정으로 보았을 때, 제54조하에 해석절차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권력 투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55조가 단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중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다른 분쟁들은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AIIB 운영과 AIIB 협정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분쟁은 국내법 또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AIIB 협정은 이러한 분쟁을 누가 해결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우려는 국내법원과 중재재판이 관련 국내법을 해석할 때 국제법을 잘 해석해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중국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제 2 절 AIIB의 분쟁해결절차

앞서 보았듯이, AIIB협정의 분쟁처리구조는 AIIB 협정문의 제54조, 제55조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위 두 규정은 1966년 설립된 아시아 개발은행이 제정한 ADB 협정문의 제60조⁶⁵⁾, 제61조⁶⁶⁾와 매우

65) ADB 협정 제60조(해석 또는 적용)

1. 은행의 회원국과 은행간에 또는 은행의 제 회원국 상호간에 발생하는 본 협정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의 문제는 동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사가 없을 때 이사회가 심의하는 문제에 특별히 관계되는 회원국은 이사회가 동 문제를 심의하는 기간중 이사회에서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킬 권한이 부여된다. 단, 이러한 회원국의 대표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대표참석의 권한에 관하여는 총회가 이를 규정한다.
2. 이사회가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이 동 문제를 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으로 한다. 총회의 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기간에는 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에 의거하여 행동할 수 있다.

비슷하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AIIB 협정과 ADB 협정의 분쟁처리구조는 1945년 시행된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문 제9조⁶⁷⁾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ADB와 IBRD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AIIB협정 분쟁처리 구조가 매우 단순하게 출현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순구조는 AIIB의 운영에 충분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AIIB협정과 다른 협정들간의 유사성은 AIIB협정의 분쟁처리구조의 설립에 필연적이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다.

이러한 AIIB협정 분쟁처리구조의 충분성은 반드시 AIIB의 목표와 AIIB 협정문에서 시행하기로 한 AIIB 과업을 포함하는 AIIB협정문의 내용속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6) ADB 협정 제61조(중재)

은행과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국가간이나 또는 은행의 업무를 종결시키는 결정이 채택된 후에 은행과 회원국간에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동 조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3인의 중재인중 1인은 은행이 임명하고 다른 1인은 관계국이 임명하며 나머지 1인은 당사국이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임명하거나 또는 총회가 채택하는 규정에 명시되는 기타 기관이 임명한다. 그것이 최종적이고 또한 당사국을 구속케 하는 데에는 중재자의 다수결로서 충분하다. 제3중재자는 당사국이 견해의 차이를 일으키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67) IBRD 협정 제9조(해석)

- (a) 본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회원국과 본 은행 또는 본 은행의 제 회원국상호간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의문이 이사임명권이 없는 회원국에 특히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회원국은 제5조 제4절 (h)에 의거하여 대표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 (b) 이사가 전기 (a)에 의거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회원국은 전기 의문을 총회의 최종결정에 부의한다. 총회에 부의한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는 본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c) 본 은행과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국가와의 사이 또는 본 은행과 항구적인 정권처분을 당하고 있는 회원국과의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차이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한다. 3인의 중재인은 본 은행의 지명하는 자 1명 기타는 관계당사국에서 임명한 중재인 및 심판관 1명으로서 구성된다. 심판관은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본 은행이 채택한 규정에 정하는 기타의 당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심판관은 당사국의 의견차이가 있는 모든 소송문제를 결정하는 전권을 보유한다.

즉, AIIB의 목적은 AIIB 협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즉 ① 인프라 및 그 밖의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조성하고, 부를 창출하며, 아시아 지역내 인프라 간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② 다른 다자 및 양자 개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도전 과제들을 처리하여 나가는 데 있어 지역간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요컨대, AIIB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아시아 인프라와 다른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인프라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국제기관과 협력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더 일반적이고 정책 지향적이지만, 첫째 목표는 인프라와 인프라 연결을 위한 다른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IB의 목적은 “아세아 및 극동지역(이하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지역내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 발전과정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촉진시키는 데에 기여함에 있어”⁶⁸⁾ ADB의 목적과는 다르다. 또한 AIIB의 목적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 회복과 생산시설의 재건 및 덜 발전된 나라의 생산시설과 원자재의 발전을 돕고, 생산성 증진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 하면서, 회원국의 재건과 영토개발을 돕는” IBRD의 목적과도 확연히 다르다. IBRD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재건과 더욱 관련이 있는데, ADB와 IBRD 두 기관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광의의 정책관점과 관계가 있다.

그들의 목적이 얼마나 다른 지가 분쟁 해결 방법에 얼마나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각기 다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분쟁해결 방법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AIIB는 공공사용을 위한 영구적인 설치, 건설시설을 일컫는 인프라 건설사업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계약시공

68) ADB협정 제1조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계약 (Build-Operate-Transfer, BOT) 같은 많은 상업 및 금융 방법은 인프라를 위한 자금마련이나 건설을 위해 창안되었다. AIIB의 운영은 위와 같은 인프라 건설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관이 되었다. 프로젝트에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의 다양성이 AIIB 모델의 자금 운용 방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으므로, ADB에서 운용된 직접차관, 주식투자, 보장조항과 같은 기존의 자금제공 방법 외에도,⁶⁹⁾ AIIB 협정은 AIIB가 특별기금을 줄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AIIB 협정문 제17조에 명시되어 있고, 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제28조에 규정된 특별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총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을 제공한다.”⁷⁰⁾고 규정하고 있다.

AIIB 협정에 정의된 특별기금은 ADB 협정에 명시된 것과는 다르다. 주요 차이점은 AIIB의 특별기금은 인프라를 위한 자금 확충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ADB 협정에선 이와 다르다. 게다가 AIIB의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자금유동방법에 대한 언급은 미래에 AIIB에 의해 제공될 불확실한 자금 확충 방안을 열어 두고 있다. 자금 확충과 투자의 새로운 형태는 ADB 관행에선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ADB에서 도입된 분쟁해결방법만으론 앞으로의 AIIB 운용을 위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분쟁 해결 방법의 불충분성은 ADB 협정 하에서 이미 문제가 되어왔다. 이는 ADB가 본부를 마닐라에 설립할 당시인 1966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ADB 협정 제3장에 충분한 규율이 부족했는데, 필리핀과 ADB의 본부와 관련된 협정(Philippines and ADB Agreement Regarding the Headquarters of the ADB, P-ADB Agreement)의 제3장 제5절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69) ADB 협정 제11조

70) AIIB 협정 제11조

은행은 법적 절차의 모든 형태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차관, 의무를 보증, 증권의 판매, 구입, 인수하는 등의 권력 행사를 할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필리핀의 사법부에 소환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ADB 협정에서 필리핀 법과 필리핀 사법부를 분쟁해결방법에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필리핀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한적 주권면제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ADB가 수행하는 상업거래는 외교적 면책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AIIB에서 논의되는 면제는 추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AIIB 협정의 분쟁해결방법의 불충분성이 명확하다. AIIB 협정의 초안이 단순히 ADB 협정의 분쟁해결방법을 AIIB로 단순히 차용하면서 이러한 불충분성의 중요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AIIB 협정은 ADB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업적 역할의 권한을 부여 받으면서 다른 정책이 추가되었어야 하며, 이를 방치한 것은 태만의 결과라고 본다. 특히 중국의 법제도가 필리핀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권한이 주어진 후엔 적절한 혁신이 분쟁해결방법에 추가되었어야 한다.

제 3 절 분쟁해결조항의 해석권한

AIIB 협정문의 조항들의 해석권한은 이사회와 총회에게 부여되었다. AIIB 협정 제54조는 아래의 조항들을 해석할 권한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은행의 어떤 회원국과 은행 간에 또는 은행의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이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의 문제는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된다...

2. 이사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 어떤 회원국도 그 문제를 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총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은행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에 결정에 기반하여 조치할 수 있다.

AIIB 협정문 제54조가 ADB 협정 제60조와 동일한 내용임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ADB 협정의 성과 혹은 흡사한 점을 토대로 제54조를 비판하지 않거나 타당성을 감정하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AIIB 최고권위 조직인 이사회와 총회의 자치적인 운영능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양측 모두 매우 복잡한 사법적인 법률용어와 법적 개념의 해석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제6.4조는 “은행은 이 조에 따라 납입 장소를 결정한다. 다만, 창립총회까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첫 번째 분할납입은 은행의 수탁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지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AIIB의 공식적인 운영에 앞서 자금유지를 다루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중국 정부에게 관리국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제54조가 그랬듯이, AIIB 제6.4조의 전신(前身)은 ADB 협정 제6.7조⁷¹⁾인데, 이는 유엔사무총장에게 ADB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사무총장에게 적용되는 신탁법은 존재하는가? 없다! 국제연합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중시하는 유일무이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유엔사무총장은 ADB의 관리인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신탁이 면제된다. 중국이 AIIB의 실세이자 최대주주이지만, 필연적으로 일부 회원국과 담합 또는 갈등이 동반될 수 있다.

71) ADB 협정 제6.7조. 은행은 본조에 의거한 불입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제1차 회의시까지 본 조 제1항의 제1회 불입은 은행의 수탁자로서의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불입하여야 한다.

관리국가라는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국들이 중국의 부적합한 관리의무 수행을 지적하고 항의한다면 어떤 상황을 초래할 것인가? 다수결로 결정되는 투표절차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이 납득할만한 AIIB 협정문 제6.4조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

AIIB 협정문 제54조가 내재하는 또 다른 법적 제한의 예시는 개인 거래규정의 해석방법이다. 해당 사안을 다루는 규정은 다수 존재하는데, AIIB 협정문 제16조가 그 중 하나이다. 제16조⁷²⁾는 AIIB에게 민간 부문과의 자금조달 금융거래, 증권거래, 특정 유가증권의 인수, 금전 신탁 관리, 자회사 설립 등등의 금융거래 업무에 관련 된 전권을 부여한다. ADB 협정 제21조도 흡사한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AIIB 협정문은 보다 더 자유화된 시장지향적 권한을 인정한다. 시장지향적인 권한의 두 가지 예시는 “회원국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관련 법적 규정 에 따라, 차입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⁷³⁾ “은행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보조 실체를 설립할 수 있다.”⁷⁴⁾ 이 두 권한들은 ADB 협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체 “관련 법조항”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금융업무의 특성상 규정들은

72) 제16조(수수료와 요금)

1. 은행은 통상업무의 일부로서 행하거나 참여하는 직접대부에 대하여 이자 이외에 수수료를 과징하여야 한다. 동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각 대부액 또는 대부 참여액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은행의 업무개시 후 최초의 5년이 경과한 후에 은행이 회원국의 총 투표권수의 4분의 3이상을 행사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년 1%의 하한율을 인하하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동 수수료율은 년 1%를 하회하지 않는 율이어야 한다.
2. 은행은 통상업무의 일부로서 대부를 보증함에 있어 보증료를 과징하여야 한다. 보증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율에 따라야 하며 대부잔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은행의 통상업무의 기타 부과금과 은행의 특별 업무의 수수료, 요금 및 기타 부과금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73) AIIB 협정 제16.1조

74) AIIB 협정 제16.8조

국내법을 기반으로 한다. 국내법 “관련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논란 발생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해당 규정들의 해석을 반길 것인가? 더 나아가, 제54조의 해석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나라는 소수의 AIIB 회원국들뿐이다. 만약 민간 당사자와 충돌이 있을 경우 민간 당사자 뿐만 아니라 AIIB도 제54조를 시행할 수 없고, 이는 민간 당사자와의 분쟁을 남기게 된다.

제54조상의 해석권은 제54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다. 회원국들만이 해석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는 논리는, 요청이 없다면 권한도 없다는 말이기도 한다. 회원국 사이에서 AIIB 협정문 해석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6조가 다루는 지급의무 또는 제 13조에 기재된 운영방침의 집행 등과 관련된 회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제54조가 실행가능하다. 그러나 제54조는 상거래와 개인거래에 관한 해석절차를 포괄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융거래의 거래처는 대부분 국가가 아니기에, 회원국은 사적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AIIB가 문제삼은 금융거래에 재해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만약 제54조가 AIIB가 사적 당사자와 거래를 하기 위한 권한을 다루는 목적이 아니라면, 해당 사안의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AIIB 협정문에는 대책방안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잠재적 갈등과 불확실성이 제54조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제 6 장 AIIB와 국내법적 과제

제 1 절 AIIB와 국내법적 법인격

1. 문제의 소재

AIIB 협정 제45조에 따르면, AIIB는 완전한 법인격과 행위능력을 지닌다. 이것이 AIIB가 국내법상에서 법인이라는 뜻인가? 답은 아마도 “그렇다”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 즉 중국과 한국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다.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이 있다. 첫째로, AIIB 협정 제45조, 또는 협정 전문이 회원국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 둘째로, AIIB가 회원국 국내법상 법인의 지위를 가진다면, 국내법상의 법인의 요건과 AIIB 협정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중국 민법통칙 제37조와 AIIB와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셋째로, AIIB가 국내법상 법인의 지위를 가진다면, 법인으로서 지니는 민사적 또는 상사적 책임과 AIIB협정 아래서 갖는 면책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AIIB 협정의 회원국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

AIIB 협정 제45조 또는 협정 전문이 회원국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제조약과 국내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중국의 경우

중국은 국제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또는 중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관행이 이러한 입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다. 현재의 중국 관행을 따르면, 중국이 국제조약을 이행하는 데 혼합적인 관점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특정 중국법에서 확인이 되는 조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약은 중국법원에 의해 중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조약은 직접적인 시행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전자의 예로는 민법통칙 제142조⁷⁵⁾상의 민사적·상사적 특성에 관한 조약, 민사소송법 제260조⁷⁶⁾상의 절차특성 조약, 중국 해상법 제268조⁷⁷⁾상의 조약 등이 있다. 이 조항들은 관련법과 국제조약간의 충

75) 중국 민법통칙 제142조

- ①涉外民事관계의 법률 적용은 본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 ②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법률의 규정이 다를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보류한다고 성명한 조항은 제외한다.
- ③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76) 중국 민사소송법 제260조

중화인민공화국涉外조정기구의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아래 상황의 하나를 조정판결에 증거 또는 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인민법원이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그 증거에 대한 사실을 재판한 후, 판결을 집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1) 당사자가 계약상에 조정조건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사후(事後)에 서면으로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2) 피 신청인이 중재인원 재정 또는 중재 절차 과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와 의견 진술서가 있는 경우
- (3) 조정법정이 조성한 조정의 절차와 조정규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4) 재판할 사항이 조정협회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조정기구에 조정권한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판한 그 판결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하는 집행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다.

77) 중국 해상법 제268조

- ①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이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들이 발생할 경우, 국제조약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자의 예시는 직접적인 시행근거가 부족하여 중국내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WTO협정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국제무역 행정안건 심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国际经济贸易案件若干问题的规定)(2002.8.27)이라는 사법해석을 제시했다. 동 규정 제7조는 그 어떤 무역 관련 행정조치도 반드시 관련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협정의 중국내에서의 직접적인 적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AIB협정은 WTO 협정과 같이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만 집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경우

이에 반해, 한국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직접적용성과 직접효력을 긍정하는 입장이 있는데, 대법원도 GATT 및 WTO 협정을 재판준칙으로 직접 적용한 사례가 있다.⁷⁸⁾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지자체의 학교급식조례가 ‘1994년 GATT의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WTO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시행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그 협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⁷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명을 보류한 조항은 예외이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78)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제4판, p.168.

79) 앞의 각주 참조.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국내법원에서 모든 경우에 재판준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협정과 같은 자기집행적 조약은 직접 적용될 수 있지만, 조약의 국내적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입법을 요구하는 입법조약 또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국내입법이 없는 재판준칙으로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다수의견이다.⁸⁰⁾ 따라서 AIIB 협정은 스스로 집행력이 있는 행정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법인격의 인정여부

(1) 중국의 경우

중국 민법통칙 제37조⁸¹⁾의 법인요건과 AIIB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AIIB 협정 제45조의 차이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민법통칙 제37조는 조직이 법인지위를 얻기 위한 4가지 기본 조건으로, 합법적인 설립, 필요 재산 또는 금융 자원의 보유, 고유한 이름과 조직 및 영업을 위한 장소 보유, 독립적인 민사책임능력을 들고 있다.

이 4가지 조건을 AIIB에 적용하면, AIIB가 명시된 거래활동을 하는 동안 AIIB 협정의 제46조에 따라 민사책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제45조와 다른 조항에 따라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AIIB는 민법통칙 제37조를 완전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취해진 모든 행위에서 항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IB 협정 제45조는 AIIB에 완전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80) 앞의 책, pp.168-169.

81) 중국 민법통칙 제37조 법인은 응당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
2. 필요한 재산 혹은 경비가 있어야 함.
3. 자체의 명칭, 조직기구와 장소가 있어야 함
4.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법원은 법률의 개정이나 간접 적용의 방식으로, 민법통칙과 AIIB 협정 간의 차이와 충돌을 조정해야 한다.

생각건대, 중국 법원이 AIIB의 법적 지위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경우에는 AIIB를 완전한 법인 혹은 법인격을 지닌 조직으로 취급하고, 일부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지닌 국제기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AIIB가 면책특권을 누린다면, 중국법하에서 법인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지만 앞서 다룬 것처럼, 중국 법원은 AIIB 협정 제46조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AIIB가 완전한 민사적 책임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면책특권을 향유할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AIIB의 이중적 특성은 중국법원에 실질적이기보다는 이론적인 어려움을 가져온다. AIIB 협정 안에 명료한 규정이 있다면 협정 조항에 따라 AIIB에 민사책임을 부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IB 협정이 불명확한 경우, 중국법학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기에 법원은 방침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중국은 현재 절대적 주권면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나 AIIB 둘 다 일반적으로 소송대상 혹은 민사책임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제한적 주권면제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AIIB 협정에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법원이 AIIB의 민사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AIIB의 민사 책임은 절대적 주권 면제 원칙에서 면제된다. 중국 법원은 중국내 공기업이나 정부기구의 민사 책임을 다룰 때 같은 입장을 취한 적이 있다. 사실 중국 계약법 제36조는 정부가 무엇을 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명령을 하달할 때, 관련 법인과 조직이 관련법과 행정규제에서 정의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하도록 명시한다. 여기서 조직이라 함은 아마 민법원칙 제37조 하에서 법인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 기구를 일컫는다.

이것이 국내 상황에서 중국이 제한적 면제 원칙을 실행한 예시다. 추가적으로 국제적 의무에 대한 중국의 일반적인 입장에 비춰볼 때, 중국 법원이 AIIB를 협정의 명료한 지침에 따라 완전한 법인으로 대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다.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입법부 또는 최고인민법원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2) 한국의 경우

한국도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민법총칙 제40조⁸²⁾에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다만, 한국은 주권면제원칙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국의 절대적 주권면제원칙을 지지하기 보다는, 제한적인 주권면제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 주권면제원칙을 지지하는 AIIB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논의는 한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민사적 또는 상사적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그러한 특권이 배제될 수 있다.

4. 소 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를 논하려면 국제기구의 법인격 여부가 선행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에 UN의 법인격이 문제가 된 이유는 유엔헌장에 국내법인격 부여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국제법인격 여부는 UN손해배상사건을 통

82)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해 ICJ가 UN은 객관적법인격이 있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AIIB 설립협정에는 명시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설립협정 제45조), AIIB의 국제법인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국제기구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각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국가들은 국내법을 통하여 국제기구에 특정 지위를 부여하거나, 또는 영미권 국가들처럼 국제기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 민법총칙 제37상의 국내법인격 조항을 통해 국제기구에 동일하게 법인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향후 중국사법부의 해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조약의 국내적 지위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중국은 민법총칙 (142조)와 민사소송법(260)조를 통해 중국이 첨부한 유보를 제외하고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충돌시 국제조약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이 헌법이 아니라 민법과 민사소송법이라는 점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 2 절 AIIB와 주권면제 원칙

1. 문제의 소재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또는 국가면제(State Immunity)란 주권 국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즉 주권면제는 국내법원이 외국이나 그 국가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으로, 재판권의 면제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절대적 주권면제와 일정한 경우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제한적 주권면제로 구분되는데, 후자가 일반적인 경향이다.⁸³⁾

AIIB 설립은 중국이 주권면제 입장을 수정하는데 꼭 필요한 변화를 가속화할 요인이다. 2015년 8월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절대적 주권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중국이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AIIB 협정이 제한적 주권면제 원칙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중국내에서 AIIB 협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중국법과 국제의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식적 입장을 재고하게 될 것이다. 제한적 주권면제원칙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명시적인 입장은 없다.

2. 중국의 입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IIB 협정은 제한적 주권면제원칙을 채택해왔다. 이 입장은 AIIB 협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대해 면제를 부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AIIB가 제한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제4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정한 거래에서 사법대상으로서 완전한 민사적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주권 면제에 대해 혼합된 입장은 AIIB의 조항과 더불어 그 정신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중국 법원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가져온다. 위에 언급되었던 필리핀 법원의 ADB의 특정 활동에 대한 사법권을 다시 서술한 P-ADB 협정을 비취보자. 중국 정부는 중국 AIIB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P-ADB협정과 비슷한 협정을 AIIB와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중국과 AIIB의 주권면제에 대한 입장간의 갈등을 고려할 때, 이 협정은 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다. 또 다른 옵션은 중국의 주권 면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AIIB와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만약 수정된 입장이 채택된다면 AIIB 협정과 중국법 사이에 직접적 갈등이 없어질 것이므로 P-ADB 협정과 같은 협의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만약 중국

83)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pp.79-80..

이 주권면제 입장을 수정한다면 AIIB와 중국 법 간 다른 불일치 사항들 역시 AIIB 협정의 조문을 이식/대체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국 법원이 AIIB 협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AIIB의 사적 특성과 관련된 활동을 대처할 때 분명한 방침을 찾기 위해서 주권 면제에 대해 수정된 입장이 법원이 AIIB의 활동에 사법권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국의 주권 면제 이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만약 수정된 제한 주권 원칙이 채택된다면, 법원은 AIIB에 의한 모든 활동과 거래들이 협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AIIB의 설립이 절대적 주권 면제에서 제한적 주권 면제로 입장을 전환하도록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이유다.

3. 한국의 입장

우리나라의 학계의 입장에서는 제한적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견해라고 하겠다. 이와 반해, 법원에서도 기존의 절대적 면제원칙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이 있지만, 현재에는 대부분 상제한적 주권면제원칙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대법원 합의체 판결(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는 것⁸⁴⁾으로 우리나라의 주권면제에 대한 입장을 같음하고자 한다.

국가의 영토고권에 따라 민사재판권도 국적을 묻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미친다. 다만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약이나

8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 법원행정처, 2008, p. 11, 김도형, “주권면제에 관한 한국 법원의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5.12,에서 재인용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민사재판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법원은 원칙적으로 외국국가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다. 따라서 국가는 외국의 법원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로서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면제의 범위에 관하여는 절대적 면제설과 상대적 면제설이 대립하고 있다. 절대적 면제설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성질을 묻지 않고 항상 재판권이 면제되지만, 상대적 면제설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 자체의 성질에 따라 재판권면제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종래 절대적 면제설을 취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75. 5. 23.자 74마 281 결정), 이후 견해를 변경하여 상대적 면제설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4. 소 결

국제기구란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제를 향유하고 있고, 이러한 면제는 그리고 각각 개별협약 및 국내재판소 등을 통해 향유된다. 이러한 국제기구에게 면제와 특권을 인정하는 주된 목적은 소재지국으로부터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국제기구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IIB 협정도 기구에게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고 있는

데, 이러한 기능적 필요성에 기반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필요성은 연방국가(특히 미국) ‘necessary and proper clause’ 해석을 기반으로 한 묵시적 권한의 이론에서 도출된 것으로, 연방법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주에 유보된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된다. 다만, 이러한 국제기구의 기능적 필요성의 범위는 해당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일반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구의 본부가 소재한 국가와 기구간에 일련의 협상으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기구가 필요로 하는 것과 본부소재지국간의 다양한 부처간, 예를 들어, 조세, 사회보장, 노동부처간의 각각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부가 복수국가에 소재하고 있다면, 기구의 기능적 필요성은 그 의미가 상대적일 수 있고, 본부 소재지국에서 기능적 필요에 의한 면제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의 분쟁당사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다자조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기구의 본부가 소재한 국가와 국제기구간 양자협정(또는 본부협정)을 체결하거나, 개별 국내입법을 통해 해당 국제기구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AIIB의 경우, 기구의 특징상 일반적인 다자조약의 형태, 즉 기존 MDB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ADB 등과 같이 다른 유사한 기구와 마찬가지로, 본부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1월 중국은 AIIB와 본부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AIIB 설립협정에 포함된 특권과 면제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있는데, 위 본부협정 제4조를 통해 중국은 국제기구에 관한, 최소 AIIB에 관하여 제한적 면제를 도입하였다.

제 3 절 AIIB와 국제사법

1. 문제의 소재

국제사법(Conflict of laws)이 AIIB의 운영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IB 협정의 제11.2조은 은행이 직접차관 제공, 주식투자, 보증서는 행위, 특별기금조성, 또는 다른 금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럼에도 은행의 대부분, 또는 모든 거래들은 정책중심적이다. 실제로 특정 사업이나 사업의 일부가 상업적인가의 여부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영향을 받는다. AIIB 협정의 제46.1조은 “은행은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며, 차입 또는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모집하거나 의무를 보증, 증권의 판매, 구입, 인수하는 등의 행위는 예외로 둔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거래에서 은행은 사무실이 있거나, 절차를 밟기 위한 대리인을 임명했거나, 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증한 지역 법원의 사법권 안에 들어간다.⁸⁵⁾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 지역법 대신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공포된 중국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에 따라 허용된다. 따라서 이는 AIIB의 사무실이 있거나, 절차를 밟기 위한 대리인을 임명했거나, 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증한 다른 어느 국가에서든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은 고려할만한 관련 이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시 현재 시행중인 국제사법(1962년 제정, 2016년 1월 개정)에 따라 외국법률도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85) AIIB 협정문, 제46.1조

2. 중국의 입장

이 장은 AIIB의 중국법에 대한 법적 도전에 대해 집중하며, 국제사법 이슈는, 중국법의 맥락에 따라 다뤄질 것이다. 은행의 영업에 대해 대처할 때, 중국 법원은 갈등과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법에 대한 법률, 민법통칙, 그리고 문제시 된 거래나 관계에 적용 가능한 특정 법률(계약법이나 보증법)에 의지해야 한다. 은행이 AIIB 협정 아래 있을 때와 중국 국제사법 아래 있을 때 가능한 활동을 비교해보면, 몇몇 활동은 불확실하게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준거법에 관한 법은 재산법과 계약법 처리 규칙을 정하지만, 보증(준거법에 관한 법은 보증 대신 대출을 규정한다)과 신탁에 관한 조항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두 사업 모두 AIIB 협정 제16조 아래 은행의 권한에 해당한다. 명시된 규정의 부재로 인해, 법원은 준거법의 결정을 위해 민법통칙과 다른 법률에 의지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장소가 법원이 고려하는 중요한 연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의 논의에 기반하여 볼 때, 다른 도전과제와 더불어 중국법이 AIIB의 가능 행동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을 수정 및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원이 중국 AIIB에 대처할 때 혼란과 불확실성 여지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AIIB의 중요 쟁점은 그것의 법적 지위와 주권 면제다. 중국이 제한주권원칙을 도입하게 되면, 중국의 국제사법시스템에 AIIB를 포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장벽이 중국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현 준거법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거나 중국내 운영중인 모든 국제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새 법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 사항은 결국 중국의 입법부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은 AIIB가 중국에 가져온 도전과제 처리에 실현 가능한 옵션이다. 사실 지난 30여 년간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법관의 괴리를 메우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즉 최고인민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법과 규정의 적용방법 결정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조직법에 의해 부여 받았다.⁸⁶⁾ 더불어 1981년 6월 발표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업무 강화에 관한 결의(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法律解释工作的决议) 제2항은 최고인민법원이 최고인민검찰원과 함께 사법해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⁷⁾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권한이 중국의 법리학상 논쟁 대상이 되었기는 하나, 중국의 법질서를 안정화 시키고 사법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운용가능하도록 바꾸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므로, AIIB협정과 AIIB 설립으로 인한 많은 도전과제와 불확실 요인들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권한으로 인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실험적이고 사법해석의 적용을 통해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입법부가 장차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⁸⁸⁾ 중국의 많은 논평가들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법규위반으로 보고 최고인민법원의 입법권한에 대해 비판을 하지만⁸⁹⁾,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실제로 중국법의 불확실 요소와 애매한 영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왔다.

86) 중국 법원조직법 제32조 : 최고인민법원은 심리과정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규와 법령을 적용하는 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해석을 한다.

87) 관련정보 <http://www.npc.gov>.

88) 2014년 최고인민법원의 제12차 회의의 최고인민법원 보고서의 제2세션에 기록되어 있다. <http://lianghui.people.com.cn/2014npc/n/2014/0310/c382480-24592263.html>.(2016. 10.16 방문). 이 보고서에서 중국 사법부에서 법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NSC에서 사법해석은 16회 기록되어져 있다.

89) 陈家新, 刍议最高人民法院的司法解释违法现象, 《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11年第5期 pp.43-46; ; 谢焕, 我国刑法司法解释违法性问题研究——以盗窃罪定罪量刑标准地区差异为视角, 《宜春学院学报》, 2010年03期 pp.1-5; 陈俊豪, 我国刑法司法解释违法性分析及其制度完善 《企业家天地》 2007 年12 月号, pp.186-197.

제 7 장 결론 : 전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 1 절 AIIB의 전망

AIIB 설립은 국제경제 금융질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리더십의 한 축을 맡게 하는 긍정적인 한 걸음이다. 동시에, AIIB는 아시아 국가들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해 사회기반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금융 자원과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분명히 AIIB의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중국에게 AIIB는 금융조작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입음과 함께 세계 정치에서 그들의 위상을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AIIB 협정원칙과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 기회를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

AIIB의 성공적 설립을 환영하기 위해, AIIB 각국은 AIIB가 가져올 도전과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AIIB를 수용하기 위해 입법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절대적 주권면제원칙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하되 지체없이 재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배구조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국내법에 대한 심사 및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공법과 민법 모두의 관점에서 AIIB가 연관될 분쟁들을 대처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절차법은 AIIB와 직원들이 중국법원에 연루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고, 중국의 국제사법 역시 AIIB의 운영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식적인 입법변화 이전에,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대부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AIIB 회원국은 AIIB와 관련된 사법 관행에 대하여 비엔나 조약법 협약, AIIB 협정, 국제법에 관한 원칙과 더불어 관련 국내법을 적용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각 회원국들은 국제조약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

여,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이나 유엔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등 많은 사법들을 국내판결에 적용해왔기 때문에, 해석과 관련하여 그다지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AIIB의 경우, 좁은 의미의 거버넌스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AIIB와 ADB 더 나아가 AIIB와 World Bank의 협력과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⁹⁰⁾ 또한 AIIB가 개도국의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ADB 및 World Bank의 규범과 절차와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⁹¹⁾

제 2 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북한과의 협력기회로서의 AIIB

현재 북한은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단체의 회원국으로 자격이 제한된 AIIB의 투자유치 기회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협정 제3조) 따라서 북한은 AIIB의 창립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AIIB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고 AIIB 협정에 따른 최대다수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독일, 한국과 같은 투표권 상위국가가 대부분 찬성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절차는 까다로울 수 있지만 실제로 북한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⁹²⁾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출신의 중국측 인사는 AIIB의 북한 투자에 대하여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을 갖고 북한 투자계획이 나오면

90) 이승주,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국제정치: 거대 FTA와 AIIB의 사례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No. 2015-22, p.13.

91) 이승주,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국제정치: 거대 FTA와 AIIB의 사례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No. 2015-22, p.13.

92) [유라시아포럼] AIIB 통한 북한 인프라 투자 "까다롭지만 가능", 조선비즈, 2015. 7.1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3/2015071301185.html (2016.10.16. 방문)

한국, 다른 회원국들과 논의를 하겠으며, 그 방식은 자금지원(원조)이 아니라 커머셜 비즈니스(상업성) 방식이라고”이라고 부연했다.⁹³⁾

우리는 북한의 AIIB 가입에 대한 전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AIIB 참여를 통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동북아 개발을 통한 향후 통일기반 조성에 AIIB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 GTI)과 AIIB 참여를 연계시킬 수만 있다면 GTI를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기관(PIU: Project Implementation Unit)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재원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 가능하다.⁹⁴⁾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전략적 제휴로서의 AIIB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간에 AIIB를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여 두 전략의 공동적인 진출대상지역인 몽골 러시아 및 북한 등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한 교량의 역할로서 AIIB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내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요 대상사업인 철도·해운·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업성을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진행하여 향후 한중협력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 거점 확보, 수요창출 등 추구하기 위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다.⁹⁵⁾

93) 중국도 '대중교통시설 문화유산 등재' 강력한 저지 활동, 연합뉴스 2015.02.28.일자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8/0200000000AKR20150528063200083.HTML?input=1179m> (2016.10.16. 방문)

94) 임호열 등 4인,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2, 2015, p.14.

95) “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보도자

3. 국내 ICT 산업발전의 기회로의 AIIB

AIIB는 기존의 MDB와 동일하게 에너지, 운송 등의 인프라 이외에도 ICT분야에서도 많은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브로드밴드, 무선네트워크구축 등과 같이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ICT 분야에 대한 좋은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ICT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및 인프라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다자개발은행들도 ICT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에서 ICT를 통해 산업간의 융합, 경쟁패러다임변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노리고 있다.⁹⁶⁾

따라서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이 ICT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대상국이 현재 AIIB에 불참하거나 가입승인이 거절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 및 해외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료(2016.02.25.), p.1. <http://economy.go.kr/postView.do?seq=9276&boardSeq=9&curPage=10&pageNum=&search=&searchName=> (2016. 10. 15 방문)

96) 조인호, 김현중, “AIIB의 의미와 ICT의 기회” 『디지에코 보고서』2015.04.29. pp. 4-7.

참고문헌

주요논문 및 서적

- 강태호, “양안정상회담, 푸젠성에 훈풍대만의 AIIB 가입 문열려”, 『Issues&Analysis』 2015.12.
- 고정식,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프로젝트”,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3호, 2015.9.
- 곽동진, 김현, “국제금융레짐으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성립과정 분석” 아태연구 제21권 제4호, 2014.
- 박태균, 박태호, “1960년대 아시아개발은행의 창립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2호, 2001.
- 오영일, “AIIB출범:아는 만큼 활용한다”, 『POSRI보고서』, 2015.04.29.
- 이봉걸, 송송이, “AIIB출범과 우리기업의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방안”, 『TradeFocus』, Vol.14 No.52
- 이상모등,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지역적 협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6.
- 이승주, “동아시아지역 아키텍처 재설계의 국제정치: 거대 FTA와 AIIB의 사례를 중심으로”, 『JPI정책포럼』 No.2015-22, 2011.
- 이승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 거버넌스” 『EAI NS P Report 47.
- 이현태, 김준영, “AIIB 발전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오늘의 세계경제』, Vol.16No.25(2016)
- 임호열등 4인, “AIIB 추진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KIEP오늘의 세계경제』 Vol.15No.12, 2015.

참 고 문 헌

- 장원재, “AIIB사태로 본 일본의 대(對) 중국인식”, 『일본공간』 17호, 2016.
- 조인호, 김현중, AIIB의 의미와 ICT의 기회” 『디지에코보고서』 2015.04.29.
-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 최원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출범 : 평가와 전망”, 『주요 국제문제분석』, 2016.09.
- 코트라, 『다자개발은행 재원조달방법과 절차』, 코트라, 2016.3.
- 한국금융연구원, “AIIB 출범선언과 향후 논의의 방향”, 『국제금융이슈』 23권44호, 2014.11.
- 한국금융연구원, “일본정부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여유보 및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24권14호 2015.4.
- 陈俊豪, 我国刑法司法解释违法性分析及其制度完善 《企业家天地》 2007年12月号.
- 陈家新, 刍议最高人民法院的司法解释违法现象, 《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11年第5期.
- 谢焕, 我国刑法司法解释违法性问题研究——以盗窃罪定罪量刑标准地区差异为视角, 《宜春学院学报》 2010年03期.
- 强力, “亚投行面临的法律问题与对策”, 载《第二节长安与罗马两个文明的对话国际学术研讨会》, 2015.06.02.
- 谢世清: 《国际货币基金组织份额与投票权改革》, 载《国际经济评论》, 2011年第2期.
- 黄志勇, 《亚洲开发银行的运行分析及其对筹建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的启示》, 载《东南亚纵横》, 2013年第11期, 第7页.
- Raphaelle Faure, etc,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 A short guide”, December 2015.

인터넷 사이트

<http://www.aiib.org>
<http://www.ajunews.com/>
<http://biz.chosun.com>
<http://economy.go.kr>
<http://lianghui.people.com.cn>
<http://sz.southcn.com>
<http://web.worldbank.org>
<http://world.huanqiu.com>
<http://www.bloomberg.com>
<http://www.hengqin.gov.cn>
<http://www.inbar.int>
<http://www.investopedia.com>
<http://www.mosf.go.kr>
<http://www.npc.gov>
<http://www.sectesco.org>
<http://www.yonhapnews.co.kr>
<https://www.posri.re.kr>
<https://www.shareweb.ch>
<http://news.xinhuanet.com/>